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79 호 2022. 12. 29.(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283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284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285호[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0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286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287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288호[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40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289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611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46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612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55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613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63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95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 74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296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91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08호[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9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09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3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9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10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7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0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11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10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13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0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16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0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19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16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814회[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1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815회[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817회[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공고]..... 12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820회[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67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을 “국장 및 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국의 설치)”를 “(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를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미디어정보과, 경제일자리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모사업 총괄”을 “공모사업 총괄, 인구정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민소통과”를 “주민자치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환경미화과”를 “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보육, 인구정책”을 “보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담당관·과”를 각각 “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과”를 “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부서란 중 “징수담당관”을 “세무2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실·국·소·관장 또는 담당관·과장”을 “국·소·관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실·국·소장”을 “국·소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실·국·소·관장, 담당관·과장”을 “국·소·관장, 과장”으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⑱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⑲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임징수관 : 자원순환과장

3. 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⑳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실·국·소·관장 및 담당관·과장”을 “국·소·관장 및 과장”으로 한다.

㉑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국, 담당관·과”를 “국, 과”로 한다.

㉒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행정기구의 명칭 체계를 간소화하고, 구정 현안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국 및 담당관·과장의 명칭 변경(제2조)
 - 1) 실·국의 명칭을 국으로 통일
 - 2) 담당관·과장의 명칭을 과장으로 통일
- 국의 명칭 변경
 - 1) 기획조정실 → 기획재정국(제3조, 제4조)
- 과의 명칭 변경
 - 1)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제4조제1항)
 - 가)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과
 - 나) 미디어정보담당관 → 미디어정보과
 - 다) 경제일자리담당관 → 경제일자리과
 - 라) 회계담당관 → 회계과
 - 마) 징수담당관 → 세무1과
 - 바) 부과담당관 → 세무2과
 - 2)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제5조제1항)
 - 가) 주민소통과 → 주민자치과
 - 3)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제6조제1항)
 - 가) 복지지원과 → 복지정책과
 - 나) 환경미화과 → 자원순환과
- 분장사무 조정
 - 1) 인구정책업무를 복지환경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이관
(제4조2항제1호, 제6조제2항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96명”을 “70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8명”을 “68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8명”을 “2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01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699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41	24	3	4	2	8
6급 이하 계	652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701명(증 5명) (제2조)
 - 1) 집행기관의 정원 : 681명(증 3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증 2명)
-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조정 (별표 3)
 - 1) 6급 이하 : 652명(증 5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8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지역의 특산품 선정 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유통·홍보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북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구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이 생산한 제품
1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3. 구 고향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을 포함한다)
1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구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구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또는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에서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 :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

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기금업무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21. 10. 19. 공포, '23. 1. 1.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한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수정가결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제1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2조 ~ 제6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7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제8조 ~ 제23조)
-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부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법”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하고,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 (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구인서명부”를 “주민투표청구서”로,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을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

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심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 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장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0조(종전의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및 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1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				
수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서명일자	서명또는날인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하고,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으로 개정(2022. 4. 26.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수정 가결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제3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 법령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
- 주민투표 대상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제4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내용 신설(제8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제13조 ~ 제16조)
- 심의회 의장(당연직)과 부의장 호선 규정 신설(제13조)
- 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적 명시(제14조)
- 부칙 개정 및 관련 서식 수정(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8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람을”을 “자를”로 한다.

제3조 중 “사람을”을 “자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영 제4조제5항 및 영 별표 1을 따르되, 영 별표 1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4)에 구청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1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5항”을 “영 제4조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 및 예외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 2차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수정 가결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명확화 및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변경(제4조)
 - 1) 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대상 및 예외 경우 명확화
 - 2)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기준 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별표 1을 따름으로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변동계수를 1.1로 규정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제5조)
 - ‘영 제4조제5항’ → ‘영 제4조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의
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
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
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북부소방
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 범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
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 방법 등)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제1조 ~ 제2조)
-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제3조)
- 의용소방대 지원 방법 등(제4조)
- 의용소방대 포상 규정(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8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정수당

연도별	월정수당	비고
2023년	2,357,12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22. 10. 19.)된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내역 중 월정수당에 대한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됨에 따라 공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별표 1의 월정수당 중 2023년 월정수당은 2,357,12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별표 1)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611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국장, 담당관·과장”을 “국장, 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담당관·과장은 소속 실·국장”을 “과장은 소속 국장”으로 한다.

제2장 제1절의 제목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같은 조 중 “실장”을 “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미디어정보담당관·경제일자리담당관·회계담당관·징수담

당관·부과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미디어정보과장·경제일자리과장·회계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주민소통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환경미화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담당관·과의 사무분장)”을 “(과의 사무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담당관·과”를 “과”로 한다.

별표 1의 부서명란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하고, 기획예산과 분장사무란 중 제89호를 삭제하고,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0. 인구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부서명란 중 “미디어정보담당관”을 “미디어정보과”로, “경제일자리담당관”을 “경제일자리과”로, “회계담당관”을 “회계과”로 하고, 징수담당관란과 부과담당관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별표 회계과란 다음에 세무1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무1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정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3. 기부금품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정 종합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통계연감 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

7. 지방세의 징수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환급 및 충당에 관한 사항
9. 채권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지출보고서 총괄에 관한 사항
16.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
17. 세목별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18.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
19.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
21.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
23. 재산조회 및 시가표준액 회신에 관한 사항
24.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5. 주택가격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6.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7.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세무1과란 다음에 세무2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무2과

1.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3. 지방세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
4. 공매, 교부청구, 징수촉탁서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5.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재제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체납액 증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
9.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0.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11.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 12.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 13.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 14.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 15.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
- 16.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 17.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18.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
- 19. 세목별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 20.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
- 21.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2.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
- 23.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24.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사항
- 25. 세외수입의 수납 정리에 관한 사항
- 26. 의존수입(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세입정리
- 27.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 28. 지난연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 29.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 30.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총무과 분장사무란 중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4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 20. 공무직 채용 및 배치전환(청원경찰의 채용·현원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

별표 1 부서명란 중 “주민소통과”를 “주민자치과”로 하고, 주민자치과 분장사무란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3. 청원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관광진흥과 분장사무란 중 제31호, 제3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부서명란 중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복지정책과 분장 사무란에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 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가족정책과 분장사무란 중 제5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농수산과 분장사무란에 제103호부터 제10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3. 어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4. 수상레저사업 및 기구등록에 관한 사항

105.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부서명란 중 “환경미화과”를 “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별표의 건설과 분장사무란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도시과 분장사무란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교통행정과 분장사무란 중 제32호를 삭제하고, 같은 별표 건축주택과 분장사무란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회계담당관”을 “회계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담당관·과”를 “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호나목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회계담당관”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과, 회계담당관, 총무과, 안전총괄과, 미디어정보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을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총무과, 안전총괄과, 미디어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미화과, 경제일자리담당관”을 “자원순환과, 경제일자리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2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7-2) 중 “부과담당관”을 각각 “세무1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2호와 제4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단서 중 “실·국장”을 각각 “국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담당관·과”를 “부서”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행정기구의 명칭 체계를 간소화하고, 구정 현안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 사항 반영

1) 실·국 및 담당관·과의 명칭 변경 반영(제1조, 제2조, 제7조)

가) 실·국 → 국, 담당관·과 → 과

2) 국의 명칭 변경 반영(제3조)

가) 기획조정실 → 기획재정국

3) 과의 명칭 변경 반영(제3조, 제4조, 제5조)

가)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과

나) 미디어정보담당관 → 미디어정보과

다) 경제일자리담당관 → 경제일자리과

라) 회계담당관 → 회계과

마) 징수담당관 → 세무1과

바) 부과담당관 → 세무2과

사) 주민소통과 → 주민자치과

아) 복지지원과 → 복지정책과

자) 환경미화과 → 자원순환과

나. 분장사무 조정(별표)

1) 구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별표 1)

가)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

나) 세무부서 간 담당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 변경사항 반영

다) 신설사무 및 이관사무 등 변경사항 반영

- 기획예산과 “청원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 삭제, 인구정책 관련 사무의 담당부서 이관사항 반영(가족정책과 → 기획예산과)
- 총무과 공무원 관련 용어 수정사항 반영
- “현업실무원 및 도로보수원” 삭제,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직
- 주민자치과 “청원에 관한 사항” 신설
- 어촌체험마을, 수상레저사업 및 기구등록, 산하해변 물놀이장 관련 사무의 담당부서 이관사항(관광진흥과 → 농수산과) 반영
-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 건설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무의 담당부서 이관사항(교통행정과 → 도시과) 반영
- 건축주택과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합계	합계		701	472	20	52	36	121(4)
	정무직		1	1	—			
	일반직		699	470	20	52	36	121(4)
	별정직		1	1	—			
정무직	구 청 장		1	1	—			
일 반 직	계		699	470	20	52	36	121(4)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4		1		
		서기관	3	3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41	24	3	4	2	8
		행정	26	15	3		2	6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농업/ 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	1					
의무		2			2			
시설		3	3					
농업/해양수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6급	소계	149	108	6	11	7	17
		행정	64	48	5	1	1	9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11	3				8
		행정/사서	4					4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3	3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7	7				
		행정/공업	4	2				2
		세무	3	3				
		전산	1	1				
		사회복지	3	3				
		속기	1			1		
		공업	1	1				
		농업	2	2				
		녹지	1	1				
		약무/간호	1				1	
		해양수산	1	1				
		보건	2	2				
		보건진료	1				1	
		공업/환경	1	1				
		시설	16	16				
		방송통신	2	2				
		운전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7				7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7급	소계	220	162	6	16	10	26
		행정	94	68	6	1	4	15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8	5				3
		행정/사서	3				3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5	5				
		행정/학예연구	1	1				
		세무	8	8				
		전산	2	2				
		사회복지	15	8				7
		사서	3				3	
		공업	4	4				
		공업/환경	2	2				
		농업	3	3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녹지	5	5				
		수의	1	1				
		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의료기술	2				2	
		간호	5				5	
		보건진료	1				1	
		환경	3	3				
		시설	28	28				
		시설/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4	4				
		운전	3	3				
		전기운영	1	1				
농림운영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8급	소계	210	125	3	19	11	52	
		행정	72	40	2			30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1	9				2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시설	6	6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운전	2	2					
		세무	7	7					
		전산	3	2				1	
		사회복지	16	5					11
		사서	3					3	
		사서/공업	1					1	
		공업	5	1			1	3	
		공업/환경	2	2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	3	3					
		녹지/시설	2	2					
		해양수산	2	2					
		농업	1	1					
		보건	7	3				4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	4					4	
		간호	15					7	8
		시설	21	21					
		시설/전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방송통신	2	1				1	
		운전	7	5				2	
		방재안전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9급	소계	73	46	2	1	6	18(4)
		행정	32	19			1	12(4)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1	1				
		행정/농업	1	1				
		세무	2	2				
		사회복지	9	7				2
		사서	4				4	
		속기	1		1			
		공업	3	3				
		공업/환경	1	1				
		녹지	1	1				
		보건	2	2				
		보건/의료기술	1				1	
		시설	6	6				
		방송통신	1	1				
		운전	1			1		
별 정 직	계		1	1				
	6급	소계	1	1				
	상당	비서	1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증 5명(696명 → 701명)

나. 기관별 정원 조정

1) 의회사무과 : 증 2명(18명 → 20명)

2) 직속기관 : 증 3명(49명 → 52명)

다.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1) 6급 : 증5명

○ 본청 : 증 2명(행정 감 1, 행정·녹지 증 1, 행정·시설 증 1, 시설 증 1)

○ 의회사무과 : 증 1명(속기 증 1)

○ 사업소 : 증 1명(행정·사서 증 1)

○ 동 : 증 1명(행정 증 1)

3) 7급 : 증3명

○ 본청 : 증 2명(행정 증 3, 행정·녹지 감 1, 행정·환경 감 1, 행정·시설 감 2, 사회복지 증 1, 공업·환경 증 1, 녹지 증 1)

○ 의회사무과 : 증 1명(행정 증 2, 속기 감 1)

○ 직속기관 : 증 1명(수의·약무·간호 감1, 보건·의료기술·간호 증 2)

○ 동 : 감 1명(행정 감 1)

4) 8급 : 증3명

○ 본청 : 증 1명(행정 감 1, 행정·시설 감 2, 행정·운전 증 1, 사회복지 감 1, 녹지 증 1, 녹지·시설 증 1, 보건 증 1, 시설 증 1)

- 직속기관 : 증 3명(간호 증 2, 운전 증 1)
- 사업소 : 감 1명(행정·사서 감 1)
- 5) 9급 : 감 6명
 - 본 청 : 감 5명(행정 감 1, 공업·환경 감 1, 녹지 감 1, 녹지·시설 감 1, 보건 감 1)
 - 직속기관 : 감 1명(운전 감 1)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613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항 외의 부분 중 “실·국장, 담당관·과장”을 “국장,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실·국장, 담당관·과장”을 “국장, 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국”을 “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실·국장, 담당관·과장”을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장, 과장”으로, “실·국장, 담당관·과장”을 “국장, 과장”으로 한다.

별표 1 공통사항 및 부서별 기안 및 전결 구분 중 “담당관·과장”과 “실·국장”을 각각 “과장”과 “국장”으로 한다.

별표 1 공통사항 제1호란 중 나목 “실·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란 중 다목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표 1 공통사항 제5호란 중 나목 “실·과·소·동장이상”을 “과·소·동장 이상”으로 한다.

별표 1 공통사항 제7호란 가목 중 “실·과내”를 “부서 내”로 하고, 같은 호란 나목 중 “실·국간”을 “국 간”으로 한다.

별표 1 공통사항 제8호란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간제근로자	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및 결과 보고	기안			○		
----	--------	------------------------	----	--	--	---	--	--

별표 1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하고, 기획예산과 제7호란 가목과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조직관리	가. 기구 직제 조정 및 사무분장						
	(1) 기구설치·폐지 등 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기안				○	
	나. 정원관리						
	(1) 정원 조례·규칙·규정 제정 및 개폐	기안					○
	(2) 정원 승인 신청	기안					○
	(3) 정원 직렬(직급) 조정						
	(가) 6급 이상	기안					○
	(나) 7급 이하	기안				○	
	(4) 기관 및 부서별 정원 조정	기안					○
(5) 정원관리 통계 및 실태 조사	기안			○			
11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가. 인구정책 시책 발굴		기안				○
	나.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	기안				○	
	다. 기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기안			○		

별표 1 중 “미디어정보담당관”을 “미디어정보과”로 하고, 미디어정보과 제24호란과 제25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안		○			
25.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기안		○			
	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기안		○			

별표 1 중 “경제일자리담당관”을 “경제일자리과”로 하고, “회계담당관”을 “회계과”로 하고, “징수담당관”과 “부과담당관”을 각각 삭제하고, 회계과 다음에 “세무1과”와 “세무2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세무1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세정 일반	가. 지방세정 총괄		기안				○
	나. 지방세 징수전망 분석 및 목표액 책정	기안			○		
	다. 지방세 제도개선	기안		○			
	라. 세무공무원 증명서 발급	기안		○			
2. 금고 관리	가. 구금고 및 수납대행점 계약체결		기안				○
	나. 구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 및 감독	기안		○			
3. 기부금품 관리	가. 기부금품 모집 통제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4. 세무전산	가. 지방세 전산화 시책추진	기안			○		
	나. 지방세 전산실 기기 점검 및 운영	기안	○				
	다. 지방세 체납·통계 프로그램 운영	기안		○			
	라. 지방세 전산자료 관리	기안		○			
5. 세입 관리 및 결산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	기안			○		
	나. 지방세 세입 결산	기안			○		
	다. 국세 세입 결산	기안			○		
	라. 세입 정정요구 및 일계표 작성	기안	○				
	마. 세입부 정리	기안	○				
6. 지방세 통계 및 세입 월보	가. 지방세 통계연감 총괄	기안		○			
	나. 지방세 세입 월보	기안		○			
	다. 국세 세입 월보	기안		○			
7. 지방세 수납 사항 정리	가. 영수필통지서 관리	기안	○				
	나. 전산징수부 관리	기안	○				
8.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	가. 신용카드납부제 운영	기안		○			
	나. 신용카드 수납사항 확인 및 집계	기안		○			
9. 지방세환급금 관리	가. 환급금 통지	기안	○				
	나. 환급금 반환 및 충당결의						
	(1) 1,000만원 이상	기안			○		
	(2) 1,000만원 미만	기안		○			
다. 환급금 지급명령원부	기안		○				
10. 채권 관리	가. 채권 현재액 보고	기안			○		
11.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종합기획	기안					○
	나.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기안					○
	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안				○	
12.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가. 세목별 정기·수시분 부과	기안		○			
	나. 연부취득물건 자료수집 및 부과	기안		○			
	다. 자동차세 년·분납신고 처리	기안		○			
	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안		○			
	마. 징수유예						
	(1) 징수유예(2,000만원 이상)		기안		○		
	(2) 징수유예(2,000만원 미만)		기안		○		
바. 물납, 분납에 관한 사항	기안		○				
13. 지방세 부과 관련 자치법규 운영	가.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기안				○
14. 지방세 통계	가. 세목별 통계자료 작성	기안		○			
15. 지방세 소송	가. 지방세관련 소송업무 수행		기안		○		
16. 위원회 운영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17. 시가표준액 결정	가.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기안				○
18. 지방세 구제	가. 구세 이의신청 처리		기안		○		
	나. 구세 심사청구 진달		기안		○		
	다. 시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		기안		○		
19. 세무민원처리	가. 비과세·감면 신청의 접수 및 결정	기안		○			
	나. 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취소	기안		○			
	다. 납기연장 신청 처리	기안		○			
	라. 지방세관련 질의서 처리	기안		○			
20. 비과세·감면결정	가. 1억원 이상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나. 1억원 미만	기안		○			
21. 지방세 신고 납부처리	가. 구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	기안	○				
	나. 시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	기안	○				
22. 고지서 송달	가.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기안		○			
	나. 전달불능 고지서 공시송달	기안		○			
23. 과세자료 조사	가. 과세자료 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과세자료 이동·변동사항 정비	기안	○				
	다. 토지·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기안		○			
24. 유관기관 협조업무	가. 재산조회 회신	기안		○			
	나. 과세자료 조회, 협조 요청	기안		○			
25. 지방세 분야 비리방지	가. 지방세 비리방지 계획수립		기안				○
	나. 부과·징수 취약분야 자체점검		기안		○		
26. 세무조사	가.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기안				○
	나. 세원개발에 관한 기획 및 조정		기안		○		
	다. 비과세·감면사항 사후조사	기안		○			
	라. 탈루세원 자료수집·조사	기안		○			
	마. 세무조사 규칙 제·개정		기안				○
27.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대장관리	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안		○			
	나. 세원 조사실적 보고(월·분기별)	기안		○			
	다. 법인대장 작성관리	기안		○			
28. 주택가격업무 기획	가. 주택가격조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주택가격조사 종합 검토	기안		○			
29. 주택가격관리	가. 표준주택가격 관리	기안		○			
	나. 주택가격 조사	기안		○			
	다.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기안		○			
	라.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기안					○
	마.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운영		기안				○
	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서 작성·검토	기안		○			
30. 주택가격 전산화	가. 주택가격전산화 및 현황도 작성	기안		○			
	나. 주택가격자료 처리 및 변동사항 정리	기안		○			
	다. 성과품작성 제출	기안		○			
31. 주택가격 이의신청	가.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결과 통보	기안		○			
32. 주택가격 열람	가. 주택가격 의견제출 처리 및 결과 통보	기안		○			
33. 징수·감액 결의	가. 징수결의						
	(1) 5,000만원 이상	기안			○		
	(2) 5,000만원 미만	기안		○			
	나. 감액결의						
	(1) 1,000만원 이상	기안			○		
(2) 1,000만원 미만	기안		○				
	다. 가산금·증가산금 조정	기안		○			

○ 세무2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체납세 징수 기획	가.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		기안				○
	나. 체납세 징수 목표액 책정	기안			○		
	다. 지방세 징수관련 제도개선	기안		○			
	라. 체납액 현황과악 및 분석	기안		○			
2. 체납세 일반	가. 체납세 독촉고지서 발송	기안		○			
	나.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	기안		○			
	다. 체납세 일보 및 월보	기안		○			
	라. 영수원부 관리	기안		○			
	마. 체납세 징수독려 및 기타 일반사항	기안		○			
	바. 체납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사항		기안				○
3. 체납자 규제	가.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기안		○			
	나.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기안		○			
	다. 조세범처벌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에 관한 사항		기안	○			
4. 체납처분	가. 체납자 재산조회(조사)	기안		○			
	나. 체납자 재산 압류 및 해제	기안		○			
	다. 압류재산 공매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압류관련 각종 공부 관리	기안		○			
	마. 체납처분비 조정 및 징수						
	(1) 체납처분비 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 체납처분비 징수에 관한 사항	기안		○				
5. 체납자 관리	가. 고액체납자 관리		기안	○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안		○			
	다. 체납자료 관리 및 전송	기안		○			
6.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 번호판 영치 계획	기안		○			
	나. 번호판 영치 및 반환	기안	○				
	다. 미반환 번호판 정리	기안		○			
7. 정리보류·시효완성 정리	가.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의						
	(1) 5,000만원 이상	기안			○		
	(2) 5,000만원 미만	기안		○			
나. 정리보류자 사후관리	기안		○				
8. 지방세 제증명 발급	가. 세목별과세증명 신청접수 및 발급	○					
	나. 납세증명 발급 신청접수 및 발급	○					
9. 세정 일반	가. 지방세 징수전망 분석 및 목표액 책정	기안			○		
	나. 지방세 제도개선	기안		○			
10.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가. 세목별 정기·수시분 부과	기안		○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안		○			
	다. 징수유예						
	(1) 징수유예(1,000만원 이상)		기안		○		
(2) 징수유예(1,000만원 미만)		기안	○				
1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운영	가.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기안				○
12. 지방세 통계	가. 세목별 통계자료 작성	기안		○			
13. 지방세 소송	가. 지방세관련 소송업무 수행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4. 지방세 구제	가. 구세 이의신청 처리		기안		○		
	나. 구세 심사청구 진달		기안		○		
	다. 시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		기안	○			
15. 세무민원처리	가. 비과세·감면 신청의 접수 및 결정	기안		○			
	나. 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취소	기안		○			
	다. 납기연장 신청 처리	기안		○			
	라. 지방세관련 질의서 처리	기안		○			
16. 비과세·감면결정	가. 1억원 이상	기안			○		
	나. 1억원 미만	기안		○			
17. 지방세 신고 납부 처리	가. 구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	기안	○				
	나. 시세 자납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부	기안	○				
18. 고지서 송달	가.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기안		○			
	나. 전달불능 고지서 공시송달	기안		○			
19. 과세자료 조사	가. 과세자료 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과세자료 이동·변동사항 정비	기안	○				
20. 세입 관리 및 결산	가. 교부금·보조금·전입금 세입정리	기안		○			
	나. 세입 정정요구 및 일계표 작성	기안	○				
	다. 세입부 정리	기안	○				
21. 세외수입업무	가. 세외수입 총괄 지도·감독		기안		○		
	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		기안				○
	다. 세외수입 통계작성	기안		○			
	라. 세외수입 세입전망 분석		기안		○		
22. 수입증지관리	가. 수입증지 수급운영 관리	기안		○			
	나. 수입증지 수불관리	기안	○				
23. 세외수입 관리	가. 세외수입 세입 결산	기안			○		
	나. 세외수입 징수 월보	기안		○			
	다. 지난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관리	기안		○			
	라.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	기안		○			
	마.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	기안		○			
24.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	가. 신용카드납부제 운영	기안		○			
	나. 신용카드 수납사항 확인 및 집계	기안		○			
25. 세외수입 환급금 관리	가. 환급금 통지	기안	○				
	나. 환급금 반환 및 충당결의						
	(1) 1,000만원 이상	기안			○		
	(2) 1,000만원 미만	기안		○			
다. 환급금 지급명령원부	기안		○				
26. 징수·감액 결의	가. 징수결의						
	(1) 5,000만원 이상	기안			○		
	(2) 5,000만원 미만	기안		○			
	나. 감액결의						
	(1) 1,000만원 이상	기안			○		
	(2) 1,000만원 미만	기안		○			
다. 가산금·증가산금 조정	기안		○				

별표 1 중 총무과 제21호란 “공무원단체 지원”을 “공무원노조 지원”으로 하고,

제34호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4. 공무원 등 관리	가. 공무원 관리						
	(1) 채용계획 및 임용	기안					○
	(2) 전보	기안			○		
	(3) 징계 처분	기안					○
	(4) 현황 관리 및 보수지급	기안		○			

별표 1 중 “주민소통과”를 “주민자치과”로 하고, 주민자치과 제2호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원 접수 및 처리	다. 민원서류 중 다수인(5인 이상) 관련 민원	기안					○
---------------	----------------------------	----	--	--	--	--	---

같은 표 중 주민자치과 제39호란과 제40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공공갈등관리	가.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안					○
	다.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기안					○
	라. 공공갈등영향분석	기안					○
	마.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기안		○			
	바. 공공갈등관리 및 점검	기안		○			
40. 청원제도운영	가. 청원서 접수·배부	기안		○			
	나.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기안				○	
	다. 기타 청원에 관한 사항	기안		○			

별표 1 중 문화체육과 제63호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63.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나. 시설 휴관에 관한 사항	기안		○			
--------------------	-----------------	----	--	---	--	--	--

별표 1 중 관광진흥과 제11호란과 제12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중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같은 표 중 노인장애인과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종 위안행사 계획	가. 구단위 노인 위안행사 개최	기안					○
---------------	-------------------	----	--	--	--	--	---

별표 1 중 가족정책과 제19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중 농수산과 제119호란 부터 제120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수상레저기구	가. 수상레저기구 등록, 변경등록 사항	기안	○			
	나. 수상레저기구 등록 말소	기안	○			
	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수상레저사업(내수면) 등록, 변경등록	기안	○			
120. 어촌체험마을	가. 사업계획 및 대상지 선정	기안				○
	나. 사업추진,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다. 어촌체험마을 대상지 해제	기안				○

별표 1 중 “환경미화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별표 1 중 안전총괄과 제63호란부터 제65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산업재해 예방	가.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기안				○
	나. 산업재해 예방 홍보 업무 추진	기안	○			
	다.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점검	기안				○
	라. 관계법령 교육 및 홍보	기안	○			
64. 산업안전보건 관리	가.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 세부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라.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기안	○			
65.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가. 중대재해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 조정	기안				○
	나. 중대재해 세부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다.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기안				○
	라.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점검	기안				○
	마. 관계법령 교육 및 홍보	기안	○			
	바. 중대재해 관련 일반사항	기안	○			

별표 1 중 건축주택과 제41호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 공동주택 관리법에 관한 사무	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기안				○
---------------------	-----------------	----	--	--	--	---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단위업무를 조정하고, 결재권의 배분 원칙에 따라 세부사무별 전결권자 지정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명칭 조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4조, 제6조)

- 1) 실·국장, 담당관·과장 → 국장, 과장

나. 구 본청 부서별 전결사항(안 별표 1)

- 1) 공통사항

- 행정기구 명칭 조정사항 반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전결사항 조정(구청장 → 국장)

- 2) 기획예산과

- 부서 명칭 조정사항 반영
- 인구정책 관련 전결사항 이관·신설

- 3) 미디어정보과

- 행정기구 명칭 조정사항 반영
-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전결사항 신설

- 4) 경제일자리과, 회계과 : 부서 명칭 조정사항 반영

- 5)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 삭제

- 6) 세무1과, 세무2과 : 신설

- 세무부서별 담당 조정에 따라 전결사항 이관·신설

- 7) 총무과

- 단위업무와 세부사무명 통일(공무원단체 → 공무원노조)
- 공무원직 임용 및 전보에 관한 전결사항 신설

- 8) 주민자치과

- 부서 명칭 조정사항 반영
 - 공공갈등 및 청원 관련 전결사항 신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다수인 관련 민원의 정의에 따라 “5인 미만이 제기한 다수인 관련민원” 조항 삭제
- 9) 문화체육과
- 생활문화센터 휴관 전결사항 조정(구청장 → 과장)
- 10) 관광진흥과
- 수상레저기구, 어촌체험마을 관련 전결사항 삭제
- 11) 복지정책과 : 부서 명칭 조정사항 반영
- 12) 노인장애인과
- 위안행사 대상자 중 여성·아동 삭제
- 13) 가족정책과
- 인구정책 관련 전결사항 삭제
- 14) 농수산과
- 수상레저기구, 어촌체험마을 관련 전결사항 이관·신설
- 15) 자원순환과 : 부서 명칭 조정사항 반영
- 16) 안전총괄과
-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관리, 중대재해 관련 전결사항 신설
- 17) 건축주택과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전결사항 조정(국장 → 부구청장)
 - ※ 위원장 부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
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9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관·과에”를 “과에”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북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본청 합계			472		
기획재정국	국 합계		114		
	기획예산과	계	23		
		일반직	소계	23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8	행정7, 행정/시설1
			7급	8	행정7, 시설1
			8급	5	행정4, 행정/보건1
			9급	0	
기획재정국	미디어정보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전산1, 방송통신1
			7급	8	행정1, 행정/임기제 행정3, 전산2, 방송통신2
			8급	4	행정/전산1, 전산2, 방송통신1
			9급	3	방송통신1, 행정/임기제행정2
			기획재정국	경제일자리과	계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8			행정7, 공업1
8급		3			행정3
9급		2			행정2
기획재정국		회계과			계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공업1
			7급	8	행정4, 행정/시설1, 공업2, 운전1
			8급	4	행정3, 행정/운전1
			9급	1	행정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기획재정국	세무1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4	행정/세무2, 세무2
			7급	6	행정1, 행정/세무1, 세무4
			8급	4	세무4
			9급	3	행정1, 행정/세무1, 세무1
기획재정국	세무2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4	행정/세무3, 세무1
			7급	5	행정/세무1, 세무4
			8급	5	행정/세무2, 세무3,
			9급	2	행정/세무1, 세무1
행정지원국	국 합계			106	
	총무과	계		23	
		정무직		1	구청장
		일반직	소계	21	
			3급	1	부이사관1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운전1
			7급	6	행정6
			8급	6	행정3, 행정/임기제 행정1, 운전2
			9급	0	
별정직	소계	1			
	6급상당	1	비서1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세무1, 행정/공업1
			7급	6	행정4, 행정/임기제 행정1, 행정/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1	행정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5	행정3, 행정/임기제 학예연구1, 시설1
			8급	6	행정2, 행정/시설2, 보건1, 행정/공업1
		9급	0		
행정지원국	교육 청소년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5	행정3, 행정/임기제 행정1, 행정/시설1
			8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9급	2	행정1, 공업1	
행정지원국	관광진흥과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4	행정3, 시설1
			8급	4	행정3, 행정/시설1
		9급	0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계		27	
		일반직	소계	27	
			5급	1	시설1
			6급	5	행정2, 시설3
			7급	8	행정4, 행정/시설1, 시설3
			8급	6	행정2, 시설3, 시설/전산1
		9급	7	행정5, 시설2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복지환경국	국 합계		121		
	<u>복지정책과</u>	계	19		
		일반직	소계	19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5	행정1, 사회복지4
			8급	6	행정1,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4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복지환경국	노인 장애인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3,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7급	4	행정1, 사회복지2, 시설1
			8급	5	행정2, 행정/사회복지1, 행정/시설1, 사회복지1
9급	3	사회복지3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계	25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1, 행정/사회복지2, 사회복지1
			7급	8	행정2, 행정/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 임기제행정/사회복지2, 사회복지2
			8급	7	행정1, 행정/사회복지5, 행정/사회복지 임기제행정/사회복지1,
9급	5	행정3, 사회복지2			
복지환경국	농수산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1	농업/해양수산1
			6급	4	행정/농업/해양수산1, 농업2, 해양수산1
			7급	9	행정1, 농업3, 시설1, 농업/수의/해양수산1, 수의1, 해양수산1, 시설/해양수산1
			8급	6	행정/농업1, 농업/해양수산1, 해양수산2, 농업1, 시설/해양수산1
9급	1	행정/농업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계		22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4	행정/환경1, 보건2, 공업/환경1
			7급	9	행정1, 공업/환경2, 보건4, 환경2
			8급	5	행정/환경1, 공업/환경1, 보건2, 행정/환경/공업1
			9급	3	보건2, 공업/환경1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환경1, 운전1
			7급	4	행정2, 환경1, 운전1
			8급	6	행정2, 행정/환경1, 운전3
			9급	1	행정1
안전건설국	국 합계			131	
	안전총괄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4, 행정/시설1, 방송통신1
			7급	6	행정1, 행정/시설1, 시설1, 시설/방재안전1, 방송통신2
			8급	7	행정3, 행정/시설1, 시설2, 임기제 방재안전1
9급	0				
안전건설국	건설과	계		30	
		일반직	소계	30	
			5급	1	시설1
			6급	6	행정1, 시설4, 공업1
			7급	9	행정2, 공업1, 시설6
			8급	10	행정1, 행정/시설1, 공업/환경1, 시설6, 공업1,
			9급	4	공업2, 시설2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안전건설국	도시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시설1
			6급	7	행정/시설2, 시설3, 시설/임기제 시설2
			7급	7	행정1, 시설6,
			8급	5	시설5
			9급	1	시설1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녹지1
			6급	5	행정/녹지3, 행정/녹지/시설1, 녹지1
			7급	7	행정1, 녹지5, 농림운영1
			8급	5	녹지3, 녹지/시설2
			9급	2	행정/녹지1, 녹지1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7	행정5, 시설1, 운전1
			8급	4	행정4
			9급	1	행정1
안전건설국	건축주택과	계		23	
		일반직	소계	23	
			5급	1	시설1
			6급	5	행정/시설1, 시설4
			7급	10	행정2, 행정/시설1, 시설6, 전기운영1
			8급	6	행정/운전1, 시설5
			9급	1	시설1

【별표 2】

북구 의회사무과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의회사무과	계		20	
	일반직	소 계	20	
		5급	3	행정3
		6급	6	행정5, 속기1
		7급	6	행정1, 임기제행정4, 행정/임기제 행정1
		8급	3	행정2, 행정/방송통신1
		9급	2	운전1, 속기1

【별표 3】

북구 보건소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보건소	보건행정과	계	52		
		일반직	소계	30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3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1, 의무/임기제 의무2
			6급	6	행정1, 행정/간호/의료기술1, 약무/간호, 임기제 약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2, 보건진료1
			7급	9	행정1, 보건/의료기술/간호3, 간호3, 보건/약무1, 보건진료1
			8급	10	보건1, 간호4, 의료기술2, 공업1, 운전2
			9급	1	보건/의료기술1
	건강증진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1
			6급	5	보건/의료기술/간호5
			7급	7	보건1, 의료기술2, 간호2, 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8급	9	보건/의료기술/간호1, 간호3, 의료기술2, 보건1, 보건/임기제 보건2

【별표 4】

북구 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4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사업소	사업소 합계		36		
	구립 도서관	일반직	소계	27	
			5급	1	행정1
			6급	5	행정1, 행정/사서4
			7급	7	행정1, 사서3, 행정/사서3
			8급	8	사서3, 행정/사서2, 전산1, 공업1, 사서/공업1,
			9급	6	행정1, 행정/사서1, 사서4
	문화예술 회관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 1(개방형직위)
			6급	2	행정/공업2
			7급	3	행정1, 행정/임기제 행정2
			8급	3	공업1, 공업/임기제 공업1, 방송통신/임기제 방송통신1
			9급	0	

【별표 5】

북구 동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5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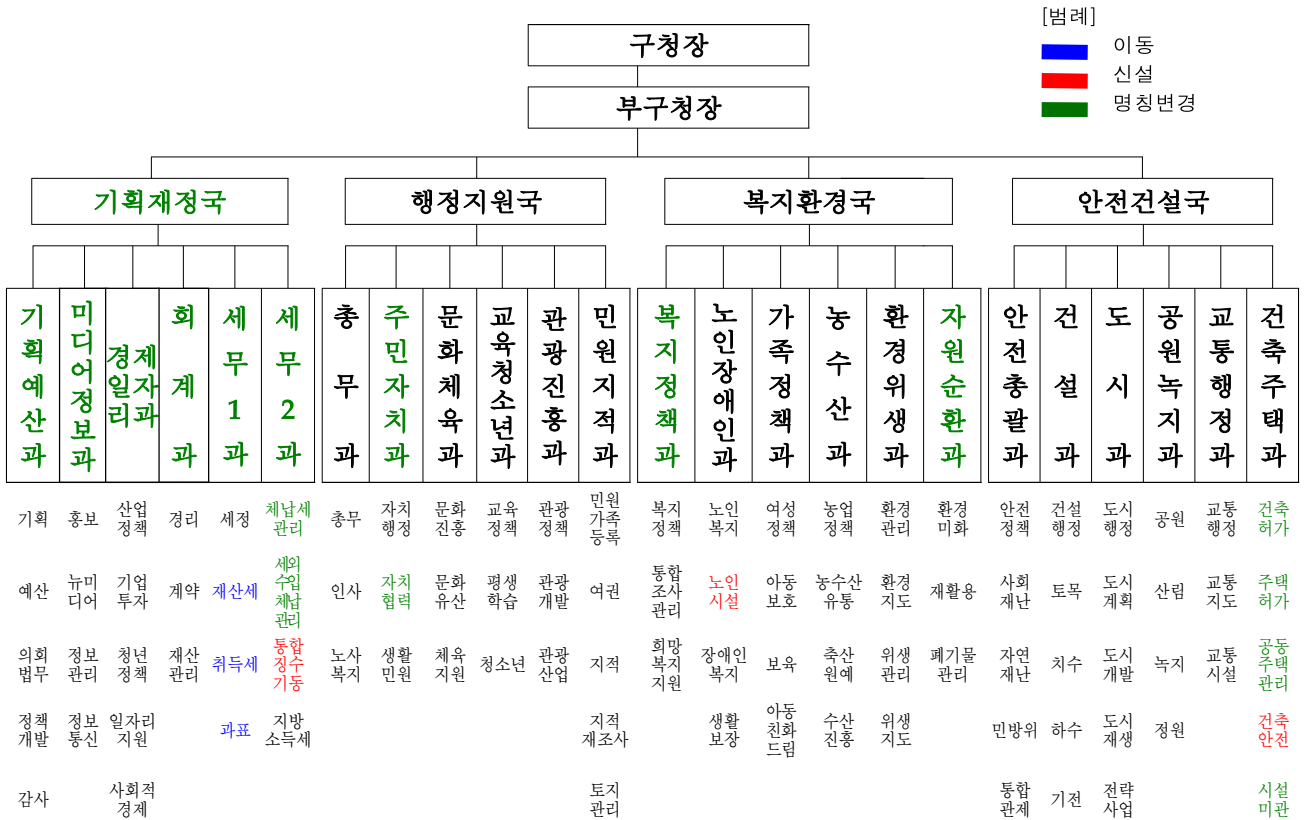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동	동 합계		121		
	농소1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6	행정3, 사회복지2, 간호1
9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동	계		17		
	농소2동	소 계	17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6	행정4, 사회복지1, 간호1
9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동	계		18		
	농소3동	소 계	18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4	행정2, 행정/농업1, 사회복지1
			8급	9	행정5,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간호1
9급	2	행정2			
동	계		14		
	강동동	소 계	14		
		일반직	5급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8급	7	행정4, 행정/농업1, 사회복지1, 간호1
9급	2	행정2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동	효문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8급	9	행정6, 사회복지2, 간호1
		9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동	송정동	계		15	
		일반직	소 계	15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5	행정2, 사회복지2, 간호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동	양정동	계		12	
		일반직	소 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8급	5	행정3, 행정/사회복지1, 간호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동	염포동	계		12	
		일반직	소 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8급	5	행정3, 사회복지1, 간호1
		9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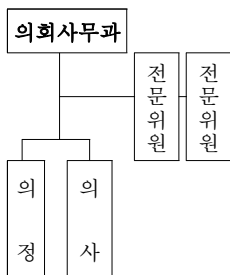
【별표 6】

복구 기구표(제3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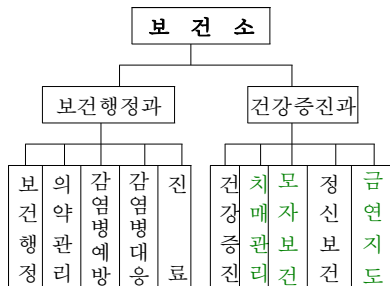
기구	국	과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4국	24과 95담당	1과 2전문(2담당)	1소 2과(10담당)	2소(7담당)	8동(16주무)
정원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사업소	동
	701	472	20	52	36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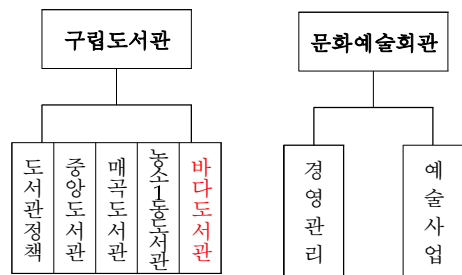
□ 의 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풍수해 방재 및 건축물 안전관리 등 안전분야 강화, 지역 주력사업 및 사업부서 기능 강화 등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용 도모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 701명(증 5명)

나. 본청 정원 조정(안 별표 1)

1)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 반영

2) 기획예산과

가) 감 1(행정8급 △1)

3) 미디어정보과

가) 감 1(행정8급 △1)

4) 회계과

가) 증 1(행정8급 +1)

5) 세무1과

가) 증 4(6급 +1, 7급 +1, 8급 +1, 9급 +1)

6) 세무2과

가) 감 4(6급 △1, 7급 △1, 8급 △1, 9급 △1)

7) 주민자치과

가) 직렬 조정(시설7급 → 행정7급)

8) 교육청소년과

가) 직급·직렬 조정(행정·임기제 행정6급 → 행정6급, 행정·임기제 행정8급 → 행정8급, 행정9급 → 행정8급)

9) 관광진흥과

가) 직급·직렬 조정(행정·시설7급 → 행정7급, 시설7급 → 행정8급)

10) 민원지적과

가) 감 1(행정8급 △1)

11) 복지정책과

가) 직급 조정(사회복지8급 → 사회복지7급)

12) 노인장애인과

가) 증 1(행정6급 +1)

13) 가족정책과

가) 감 1(행정6급 △1)

나) 직렬조정(행정·사회복지7급 2 → 행정·사회복지/임기제행정·사회복지7급 2, 행정·사회복지8급 1 → 행정·사회복지/임기제행정·사회복지8급 1) ※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14) 농수산과

가) 직급 조정(시설8급 → 시설7급)

15) 환경위생과

가) 직렬·직급 조정(공업·환경9급 → 공업·환경7급, 보건9급 → 보건8급)

16) 자원순환과

가) 직렬 조정(행정·환경7급 → 행정7급)

17) 안전총괄과

가) 증 1(행정8급 +1)

나) 직렬 조정(행정·시설8급 → 시설8급)

18) 건설과

가) 증 3(시설6급 +1, 시설7급 +1, 시설8급 +1)

19) 도시과

가) 감 2(행정7급, 시설·임기제시설7급)

나) 직렬 조정(행정·시설7급 → 시설7급)

20) 공원녹지과

가) 증 1(녹지7급 +1)

나) 직급 조정(행정·녹지7급 → 행정·녹지6급, 녹지·시설9급 → 녹지·시설8급, 녹지9급 → 녹지8급)

21) 교통행정과

가) 감 1(행정·시설8급 △1)

22) 건축주택과

가) 직급·직렬 조정(행정6급 → 행정·시설6급, 행정8급 → 행정7급, 행정8급 → 행정·운전8급)

다. 의회사무과 정원 조정(안 별표 2)

1) 증 2(임기제 행정7급 +2) ※ 정책지원관(순증 2)

2) 직급 조정(속기7급 → 속기6급)

라. 보건소 정원 조정(안 별표 3)

1) 보건행정과

가) 증 3(보건·의료기술·간호7급 +1, 간호8급 +2)

※ 감염병대응 인력(순증 3)

나) 직급·직렬 조정(운전9급 → 운전8급, 수의·의무·약무·간호, 임기제 수의·의무·약무·간호6급 → 약무·간호, 임기제 약무·간호6급,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임기제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7급 → 보건·의료기술·간호7급)

마. 사업소 정원 조정(안 별표 4)

1) 구립도서관

가) 직급 조정(행정·사서8급 → 행정·사서6급)

바. 동 정원 조정(안 별표 5)

1) 효문동

가) 직급 조정(행정7급 → 행정6급)

사. 복구 기구표 개정(안 별표 6)

1) 국·과 명칭 변경 반영

2) 담당 조정 : 증 2

가) 신설 : 증 5

(1) 본청 : 통합징수기동(세무2과), 노인시설(노인장애인과), 풍수해 방재(건설과), 건축안전(건축주택과)

(2) 사업소 : 바다도서관(구립도서관)

나) 통합 : 감 3

(1) 본청 : 여성정책(여성정책+인구정책), 도시재생(도시재생기획+도시재생시설), 시설미관(공공시설+광고물관리)

다) 명칭변경

(1) 본청 : 체납관리 → 체납세관리, 세외수입 → 세외수입체납관리 (세무2과), 민원소통 → 자치협력(주민자치과), 건축 → 건축허가, 주택 → 주택허가,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 (건축주택과)

(2) 직속기관 : 건강돌봄 → 치매관리, 생애건강관리 → 모자보건, 예방지도 → 금연지도(건강증진과)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9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을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 중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을 각각 “직속기관, 사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을 “기획예산과를”로 한다.

제5조 중 “119명”을 “118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구 본청 실·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을 “구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동”을 각각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동”으로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6호 중 “기획홍보실”을 각각 “기획예산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1항, 제8조, 제43조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별표】

공무직 등의 정원표(제5조 관련)

부서명	계	공무직				청원경찰
		사무실무원	전문실무원	시설관리원	환경공무직	
총 계	118			66	50	2
본 청 소 계	97			45	50	2
세 무 2 과	2			2		
총 무 과	6			6		
주민자치과	3			3		
문화체육과	2			2		
복지정책과	3			3		
노인장애인과	1			1		
가족정책과	5			5		
농수산과	2			2		
환경위생과	1			1		
자원순환과	51			1	50	
건설과	11			10		1
도시과	2			2		
공원녹지과	4			4		
교통행정과	2			2		
건축주택과	2			1		1
의회사무과 소계	1			1		
의회사무과	1			1		
직속기관 소계	8			8		
보건행정과	2			2		
건강증진과	6			6		
사업소 소계	10			10		
구립도서관	7			7		
문화예술회관	3			3		
동 소 계	2			2		
농 소 2 동	1			1		
강 동 동	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업무분석 및 인력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와 퇴직자 정수 조정, 행정기구 변동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 정수 : 118명(△1)

나. 부서별 조정내역

- 주민소통과 : 공무원 △1
- 환경위생과 : 공무원 증1
- 건설과 : 공무원 증1
- 도시과 : 청원경찰 △1
- 구립도서관 : 공무원 △1

다. 행정기구 변경사항 반영

-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 직속기관, 사업소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과
- 징수담당관 → 세무2과
- 주민소통과 → 주민자치과
- 복지지원과 → 복지정책과
- 환경미화과 → 자원순환과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308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천 제방 설치공사’ 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사명: 금천 제방 설치공사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94번지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적: 제방붕괴에 따른 농경지와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바 홍수 방어 대책 및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하천을 정비하고자 함
 - 나. 개요: 하천제방 설치(L=168m, H=2.5~2.9m) 등
4.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당초 : 2022. 8. ~ 2022. 12.
 - 변경 : 2022. 8. ~ 2023. 12.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그 세목조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물권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토지조서(별첨 참조)
7.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구 분	전 체	연차별 투자 계획(백만원)			비 고
		기투자	2022년	2022년 이후	
총사업비	470	470	470	-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건설과(☎052-241-7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30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3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16(2020. 6. 25.)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36호선)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6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36호선)사업
 - 나. 명 칭 :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로2-13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3. 사업규모 : 도로개설 L=557.5m, B=8.0m

구 분	시설명(노선명)	규 모		비고
		폭(m)	길이(m)	
도 로	소로2-136호선(1공구)	8.0	237.5	
	소로2-136호선(2공구)	8.0	32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당 초 : 2018. 10. 4. ~ 2022. 12. 31.
 - 나. 변 경 : 2018. 10. 4. ~ 2023. 12. 31.

6. 수용할 토지·지면·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052-241-7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 번 조 서 (소2-136)-전체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시, 군	면	리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32-1	대	397	1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37-34	이상익	2공구
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32-5	도	106	23	농소면 호계리 632	이종달	
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31-3	대	109	3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3길 3-2,401호(연암동, 황토방빌라)	염형균	
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31-2	도	26	9	울산광역시 북구		
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59-13	도	1,341	22	국(농림수산부)		
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15-3	도	13	7	울산광역시 북구		
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15-7	전	165	2	615-8	김진열	
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15-9	전	80	54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중앙길 24(호계동)	임채자	
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28-1	대	460	157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60, 103동 505호(문수산 동원 로얄듀크)	김홍기 외 1인	
1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16-1	대	289	36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중앙길 27-4(호계동)	안금순	
1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16	대	207	11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16	이기우	
1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27-1	대	463	209	남구 선암동 665-1 카프로사택 101동 401호	이상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57-3	구	1,449	32	국(국토교통부)		
1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55-21	도	1,332	148	국(국토교통부)		
1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25-2	도	13	10	울산광역시 북구		

16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25-1	대	145	57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중앙길 20-1(호계동)	이명윤	
17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24-8	전	188	121	중산동 621 현대글로리아 아파트101동 1703호	김진홍	
18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24-10	전	82	3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24-4	신춘교	
19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24-3	대	232	14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40	서상길	
20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24-7	도	43	15	울산광역시 북구		
21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24-13	전	19	1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24-1	김현 외 1인	
22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24-6	도	7	1	울산광역시 북구		
23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24-11	대	153	12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24-1	김현 외 1인	
24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24-4	도	76	39	울산광역시 북구		
25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23-7	도	76	22	울산광역시 북구		
26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23-3	대	285	14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7길 16(화봉동)	서병이	
27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955-27	도	311	20	국(국토교통부)		
28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51-5	도	30	17	울산광역시 북구		
29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51-22	대	76	75	울산광역시 북구		
30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51-13	도	17	17	울산광역시 북구		
31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52-4	도	50	37	울산광역시(교육감)		
32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52-6	대	33	2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06	이풍우	2공 구
3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51-1	대	284	23	농소면 호계리 651-1	이태랑	

34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68-4	대	61	11	농소면 호계리 651-1	이태랑	
35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68-3	도	10	9	울산광역시 북구		
36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53-11	도	26	26	울산광역시 북구		
37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53-6	대	195	34	653-6	박성호	
38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53-14	전	883	13	울산광역시 북구 갓골1길12 (호계동)	조정순	
39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53-5	대	330	81	시례리 126	박석순	
40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53-10	도	66	63	울산광역시 농소면 호계리 653-1	이신우	
41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54-3	도	46	12	울산광역시 북구		
42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54-12	전	562	214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중앙길 7	이상구	
43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56-1	전	1,328	7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56-1	윤도필	
44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56-2	도	17	15	울산광역시 북구		
45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65-2	도	60	23	울산광역시 북구		
46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65-9	대	166	8	665-9	이인채	
47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936-21 2	도	587	160	울산광역시		
48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936-23 6	잡	132	113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 124 (천곡동)	허진수	
49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936-89	천	2,391	47	국(국토교통부)		
50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936-1	천	31,074	131	국(국토교통부)		1,2공 구
5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36-33	천	70	70	국토교통부		1공구

	역시			5						
52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936-33 8	잡	38	38	울산광역시		
53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936-33 6	잡	17	17	울산광역시 북구		
54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949-42	도	18	18	국(국토교통부)		
55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63-12	대	13	13	울산광역시 북구		
56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63-16	전	41	41	울산광역시 북구		
57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63-14	대	164	164	울산광역시 북구		
58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63-15	도	3	3	울산광역시 북구		
59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949-41	도	38	38	국(국토교통부)		
60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96-9	대	35	35	울산광역시 북구		
61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62-6	도	10	10	울산광역시 북구		
62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96-8	도	14	14	울산광역시 북구		
63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695-5	전	51	51	울산광역시 북구		
64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703-8	대	342	342	울산광역시 북구		
65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953-39	구	16	16	국(농림축산식품부)		
66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949-40	도	19	19	국(국토교통부)		
67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705-5	도	11	11	울산광역시 북구		
68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705-7	대	65	65	울산광역시 북구		
6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06-11	대	154	154	울산광역시 북구		

1공
구

70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706-9	대	77	77	울산광역시 북구	
71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706-13	전	36	36	울산광역시 북구	
72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706-6	전	22	22	울산광역시 북구	
73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706-12	대	34	34	울산광역시 북구	
74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949-39	도	49	49	국(국토교통부)	
75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350-3	대	6	6	울산광역시 북구	
76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349-8	대	239	239	울산광역시 북구	
77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949-38	도	24	24	국(국토교통부)	
78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346-14	임	28	28	울산광역시 북구	
79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346-5	임	166	166	울산광역시 북구	
80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346-8	임	2	2	울산광역시 북구	
81	울산광역시 역시	북구	호계동	347-4	전	30	30	울산광역시 북구	
합 계						48,323	4,59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3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7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우리 구 산하동 산234-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7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76호선)사업

나. 명칭: 대곡산비료 진입도로(소로3-276호선)개설공사

2. 위 치: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산 234-11번지 일원(변경없음)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B=4m, L=523m(변경없음)

구분	시설명(노선명)	규모		비고
		폭(m)	길이(m)	
도로	소로 2-331호선	4	57	금회개설
도로	소로 3-276호선	4	466	금회개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농업회사법인 대곡산비료(주) 대표 박종근

나.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845-6번지

5. 사업기간(변경)

당초: 2018. 12. 27. ~ 2022. 12. 31.

변경: 2018. 12. 27. ~ 2023.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번호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m ²)									소유자		비고
				소2-331호선			소3-276호선			계			성명	주소	
				도로	사면	소계	도로	사면	소계	도로	사면	계			
1	614-3	답	395	103	56	159				103	56	159	국(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2	854-1	답	1,192				110	575	685	110	575	685	국(건설교통부)		"
3	920	천	32,009				39	210	249	39	210	249	국(건설교통부)		"
4	920-23	천	1,001	25		25				25		25	국(건설교통부)		"
5	산187-1	임	2,581	1		1				1		1	울산광역시		"
6	산187-5	임	1,522	8		8				8		8	울산광역시		"
7	산191-5	임	1,535	75	181	256	38	508	546	113	689	802	국(건설교통부)		"
8	산191-8	임	283	71	65	136				71	65	136	국(건설교통부)		"
9	산192-2	임	2,714				246	439	685	246	439	685	국(건설교통부)		"
10	산192-3	임	506				73	178	251	73	178	251	국(건설교통부)		"
11	산194-5	임	10,071				392	964	1,356	392	964	1,356	국(건설교통부)		"
12	산204-1	임	7,470				385	1,516	1,901	385	1,516	1,901	국(건설교통부)		"
13	산234-11	임	12,180				702	1,710	2,412	702	1,710	2,412	국(건설교통부)		"
계			73,459	283	302	585	1,985	6,100	8,085	2,268	6,402	8,67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11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문화체육과)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1041-1번지 일원	하천의 명칭	신명천
점용 내용	공작물의 개축	점용 면적	일시 : 50m ² 영구 : 24m ²
점용 기간	일시 : 2022. 12. 28. 계속 : 2022. 12. 29. ~ 2027.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31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2. 12. 27.
2. 점용·사용의 목적 : 동네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을 설치하여 생활체육활성화 구현 및 구민 건강증진 도모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정자동 621-9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 일시: 60.00m²
 - 2) 영구: 24.00m²
 - 나. 기 간
 - 1) 일시: 2022. 12. 28.
 - 2) 영구: 2022. 12. 29. ~ 2027.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문화체육과)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101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3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사업

나. 명칭: 염포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동 20-2번지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가. 도로 (변경)

등		급		연 장(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1	98	10	342	기정
중로	3	481	12(10)	342(342)	변경
소로	1	102	10(10)	420(420)	변경없음
소로	1	103	10(10)	87(87)	변경없음
소로	3	273	6(6)	87(87)	변경없음
소로	3	220	6(6)	154(154)	변경없음

※ ()는 사업시행자가 개설할 연장 및 폭원 임.

※ 양정1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따른 소로1-98호선이 중3-481호선으로 변경

나. 소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조성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108	소공원	북구 염포동 42일원	2,289.0	변경없음
기정	7	사회복지시설	북구 염포동 44-4일원	969.0	변경없음
기정	40	공공공지	북구 염포동 20일원	2,460.0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명: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이승훈

나.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심청골길 16

5. 사업기간 (변경)

당초: 2018. 6. 28. ~ 2022. 12. 31.

변경: 2018. 6. 28. ~ 2023.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사업 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염포동	20-2	대	127.0	12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	염포동	20-3	대	109.0	10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3	염포동	20-4	대	1.0	1.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4	염포동	23	대	187.0	18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5	염포동	39	전	87.0	8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6	염포동	40	대	201.0	201.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7	염포동	41	전	236.0	236.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8	염포동	42	전	156.0	156.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9	염포동	42-1	전	282.0	282.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0	염포동	43	전	19.0	1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1	염포동	43-1	전	144.0	144.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2	염포동	43-4	전	17.0	1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3	염포동	43-7	전	239.0	23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4	염포동	43-8	전	2.0	2.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5	염포동	43-2	전	33.0	33.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6	염포동	44-3	전	9.0	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7	염포동	44-6	전	62.0	62.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8	염포동	44-4	전	8.0	8.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19	염포동	47-4	전	309.0	30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0	염포동	47-5	전	41.0	41.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1	염포동	48-6	전	522.0	522.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2	염포동	48-7	전	32.0	32.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3	염포동	48-8	전	4.0	4.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2)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4	염포동	48-14	전	363.0	363.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5	염포동	961-20	천	17.0	1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6	염포동	961-21	천	55.0	55.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7	염포동	961-46	천	35.0	35.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8	염포동	963-3	대	43.0	43.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29	염포동	963-16	대	29.0	2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30	염포동	963-17	대	1.0	1.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31	염포동	44-5	천	52.0	52.0	박○선	울산시 서동 5○○				변경 없음
32	염포동	44-7	천	1.0	1.0	박○선	울산시 서동 5○○				변경 없음
33	염포동	48-5	임	707.0	70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34	염포동	48-13	임	20.0	20.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35	염포동	48-10	전	12.0	12.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36	염포동	961-23	천	1,540.0	1,540.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37	염포동	961-47	천	54.0	54.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38	양정동	517-3	대	549.0	549.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39	양정동	517-5	대	10.0	10.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40	양정동	517-6	대	16.0	16.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41	양정동	519-1	대	44.0	44.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42	양정동	523-25	대	212.0	212.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43	양정동	523-27	대	144.0	144.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44	양정동	523-28	대	872.0	872.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45	양정동	556-31	임	488.0	488.0	김○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동 ○○○호	김○근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1, ○○○동 ○○○호	근저당권	당 초
								안○례	울산광역시 북구 명춘로 91, ○○○동 1○○호	근저당권	
								박○영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번길 58,○○○호	근저당권	
								김○임	울산광역시 북구 명춘로 91, ○○○동 ○○○호	근저당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3)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5	양정동	556-31	임	488.0	488.0	김○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000동 000호	김○근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1, 000동 0000호	근저당권	변경 없음
								안○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91, 000동 1000호	근저당권	
								박○영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번길 58, 000호	근저당권	
								김○임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91, 000동 000호	근저당권	
								황○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마을로 156, 4000동 2000호 (하동, 광교마을40단지)	근저당권	
								이○철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106-25, 1000동 1000호(배곧동, 호반베르디움 센트로하임)	근저당권	
								문○란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7길 3, 100호(반구동, 부영연립)	근저당권	
46	양정동	746-1	대	120.0	120.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47	양정동	523-30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48	양정동	556-28	임	29.0	2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49	양정동	556-33	임	79.0	7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50	양정동	556-29	임	109.0	10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경 없음	
51	양정동	771-10	구	764.0	76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52	양정동	771-13	구	15.0	15.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53	양정동	771-17	구	646.0	64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54	양정동	771-12	구	10.0	10.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55	양정동	771-2	천	178.0	178.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56	양정동	771-14	천	32.0	32.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57	양정동	771-3	천	103.0	103.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58	양정동	771-4	구	6.0	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59	양정동	771-5	구	24.0	2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60	양정동	771-15	구	1.0	1.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4)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61	양정동	771-6	구	44.0	4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62	양정동	771-7	구	48.0	48.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63	양정동	771-18	구	156.0	15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64	양정동	771-19	구	126.0	12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65	양정동	771-8	구	20.0	20.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66	양정동	771-16	구	88.0	88.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67	양정동	772-1	천	3.0	3.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68	양정동	772-6	천	34.0	3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69	양정동	772-8	천	24.0	2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0	양정동	773-28	도	422.0	422.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1	양정동	773-29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2	양정동	773-30	도	29.0	29.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3	양정동	773-19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4	양정동	773-20	도	13.0	13.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5	양정동	773-32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6	염포동	47-6	천	39.0	39.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7	염포동	47-7	천	43.0	43.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8	염포동	48-9	천	64.0	6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9	염포동	48-16	천	4.0	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80	염포동	48-11	천	14.0	1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81	염포동	48-12	천	1.0	1.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82	염포동	48-17	천	70.0	70.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5)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83	염포동	961-18	잡	76.0	7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84	염포동	961-44	잡	30.0	30.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85	염포동	961-29	천	104.0	10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86	염포동	961-48	천	21.0	21.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87	염포동	961-31	천	176.0	17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88	염포동	961-52	천	84.0	8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89	염포동	961-32	천	340.0	340.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90	염포동	961-33	천	1,096.0	1,09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91	염포동	961-34	천	150.0	150.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92	염포동	961-59	천	316.0	31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93	염포동	961-36	천	445.0	445.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94	염포동	961-53	천	28.0	28.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95	염포동	961-54	천	197.0	197.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96	염포동	961-37	천	1,034.0	1,03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97	염포동	961-38	천	13.0	13.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98	염포동	961-55	천	11.0	11.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99	염포동	961-56	천	1,042.0	1,042.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00	염포동	961-39	천	192.0	192.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01	염포동	961-49	천	6.0	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02	염포동	961-40	천	140.0	140.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03	염포동	961-57	천	4.0	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04	염포동	961-42	천	17.0	17.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05	염포동	961-58	천	5.0	5.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06	염포동	961-51	구	21.0	21.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6)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07	염포동	963-2	잡	1.0	1.0	국 (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108	염포동	963-15	잡	25.0	25.0	국 (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109	염포동	963-19	잡	2.0	2.0	국 (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110	염포동	963-11	잡	174.0	174.0	국 (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111	염포동	963-12	잡	22.0	22.0	국 (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112	염포동	963-18	잡	1.0	1.0	국 (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113	염포동	963-14	잡	342.0	342.0	국 (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114	염포동	964-1	도	21.0	21.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15	염포동	964-3	도	32.0	32.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16	염포동	965-1	도	75.0	75.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17	염포동	965-3	도	66.0	6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18	염포동	965-5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19	염포동	965-6	도	21.0	21.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합 계				17,806	17,806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31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2. 12. 28.
2. 점용·사용의 목적 : 단독주택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이용 및 우수관로 매설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1059-9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142㎡ (영구)
 - 나. 기 간: 2022. 12. 29. ~ 2027. 5. 31. (영구)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구복연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거마로 77번길 8, 120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814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50호(2019. 7. 4.)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제2019-153호(2019. 7. 4.)로 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 제2020-24호(2020. 2. 6.), 제2020-229호(2020. 12. 10.), 제2021-88호(2021. 5. 6.), 제2021-241호(2021. 10. 28.), 제2021-317호(2021. 12. 30.), 제2022-108호(2022. 5. 6.), 제2022-150호(2022. 6. 30.), 제2022-272호(2022. 11. 24.)로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나. 명 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강동골프장) 조성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3. 사업 면적 및 규모

가. 면적: A=718,108.6m²

나. 규모: 골프장(18홀)

다. 토지이용계획(단위: m²)

합계	구분	체육시설용지	건축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녹지용지
718,108.6		189,578.0	4,930.0	46,256.0	477,344.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주식회사 새정스타즈 대표자 정상현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미포산업로 800(신현동)

5. 사업기간: 2019. 7. 4.~2023. 6. 30.

6.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181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신청개요

가. 신청자 : 귀신고래해상풍력발전 2호(주)

나. 목적 : 귀신고래해상풍력발전사업 송전선로 설계를 위한 해상 지반조사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내역

신청자		장 소	면 적 (㎡)	목 적	설치하는 공 작 물	기 간	비 고
성 명	주 소						
귀신고래해 상풍력발전 2호(주)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64, 2층(학산동 정림탑스빌)	울산광역시 복구 해상	9,255.4	귀신고래해상풍력발전 사업 wire routing 설계를 위한 해상 지반조사	-	허가일로 부터 8개월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의견제출

가.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농수산과

나. 제출기한 : 2022. 12. 30.(금) ~ 2023. 1. 18.(수)까지

다.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농수산과

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우편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복구청 농수산과(연암동), FAX : 052-241-8059)

3. 기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복구 농수산과(052-241-80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신청자		장소	면적 (㎡)	목적	설치하는 공작물	기간	비고
성명	주소						
귀신고래해 상풍력발전 2호(주)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64, 2층(학산동 정림탑스빌)	울산광역시 북구 해상	9,255.4	귀신고래해상풍력발전 사업 wire routing 설계를 위한 해상 지반조사	-	허가일로 부터 8개월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의견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체적인 의견과 기타 증빙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817호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에 따라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강화 실태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신청기간 : 2023. 2. 3.까지 (우편물은 당일 도착분에 한함)
2. 신청장소 : 복구청 건축주택과
3. 신청방법 :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방문 및 우편)
4. 사업기간 : 11월말까지 사업완료
5. 관련문의 : 건축주택과(T.241-8027~9)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함

I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공동주택지원사업)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 지원사업 구분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례 제2조제1항)
 - 2023. 1. 1. 기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지원을 신청한 단지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 임대주택은 지원 제외)
 - *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함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조례 제2조제3항)
 - 2023. 1. 1. 기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지원을 신청한 단지
 - *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함
-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최근 단지내 도로에서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 우선 선정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의무적으로 관리주체를 두어야 하는 아래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지원금액 : 677백만원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622백만원(구비)
 - ※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백만원 포함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40백만원(시 20백만원, 구 20백만원)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15백만원(구비)

□ 지원기준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례 제4조 및 별표)

구 분	세 대 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지원 상한액 (5년간 보조금 누계 부가세 포함)
공용시설 유지보수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천원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천원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천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천원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천원

-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별로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차등하여 지급 함
-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일수록, 장기수선추당금 등 자체적 재원이 부족하므로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이 높음
- 당해 연도를 포함한 5년간(2019년 ~ 2023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이 지원 상한액 범위 이내일 경우, 지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총사업비 300만원(부가세포함) 이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전액 지원 가능
- 지원 보조금은 위 표에서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모두 만족하여 함

※ 최대 지원신청 가능금액 산정 : 세부추진계획(1)의 산정 예시 참조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조례 제4조의3)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안전관리업무 비용 전액을 지원

- 안전관리위탁업체 :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위탁업체 선정 : 별도 계획 수립 후, 입찰을 통해 선정 예정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 비용 전액을 지원
- 실태점검위탁업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 지원대상단지 선정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
- 위원회 심의내용 (조례 제5조)
 - 사업 신청서(내용)의 적정성
 - 공동주택 지원사업(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사업) 대상단지 및 지원금액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신청단지 중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지원하되, 현장조사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우선 순위로 함

○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신청단지 중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우선 선정 및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시

□ 사업기간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11월까지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7월까지
-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8월까지

□ 추진일정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2022. 12월 :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공고

- 2023. 1월 : 지원사업 시행공고 종료 및 신청서 접수 마감
- 2023. 3월 : 신청단지 현장조사 및 설계내역 작성(실시설계)
- 2023. 4월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단지선정
- 2023. 5월 : 공동주택지원 사업 착공 및 시행(선급금 지급)
- 2023. 11월 : 공동주택지원 사업 완료(준공) 및 정산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2022. 12월 :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공고
- 2023. 1월 : 지원사업 시행공고 종료 및 신청서 접수 마감
- 2023. 2월 : 신청단지 현장조사, 자체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 2023. 4월 : 안전관리위탁업체 선정 및 시행
- 2023. 7월 : 안전관리지원 사업 완료

○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2022. 12월 :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공고
- 2023. 1월 : 지원사업 시행공고 종료 및 신청서 접수 마감
- 2023. 2월 : 신청단지 현장조사, 자체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 2023. 3월 : 실태점검위탁기관 선정 및 시행
- 2023. 8월 : 실태점검 사업 완료

□ 기타사항

- 사업별 상세내용 : 세부추진계획(1)·(2) 참조
- 신청서 접수

접수마감일자	접수장소	접수방법
2023. 2. 3.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241-8027~30)	• 방문접수(구청 1층 동편 건축주택과) • 우편접수(마감일자 도착 분 허용)

※ 지원신청서류 중 현장사진대장【서식4】은 방문·우편 접수와 별도로 이메일로도 송부

- **공고문 및 관련자료 다운로드 안내** (구청홈페이지 : www.bukgu.ulsan.kr)



II 불임

- 세부추진계획(1) :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세부추진계획(2)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세부추진계획(3) :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사업
- **【별표 1】**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사평가표 배점기준
- **【서식 1】**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 **【서식 2】** 공동주택 지원 신청 동의서
- **【서식 3】** 사업계획서
- **【서식 4】** 현장사진대장
- **【서식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서식 6】** 공동주택 지원 신청 협약서
- **【서식 7】** 청렴 이행서약서
- **【서식 8】** 공동주택 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
- **【서식 9】** 공동주택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서
- **【서식10】** 입찰 및 낙찰 현황
- **【서식11】** 착수계
- **【서식12】** 공동주택 지원금(준공금) 교부 신청서
- **【서식13】**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검수확인 및 동의서
- **【서식14】**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 **【서식15】** 지출품의서(작성예시)

- **【서식16】** 지출결의서(작성예시)
- **【서식17】**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신청서
- **【서식18】**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신청서
-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및 매뉴얼 (예시)
 - ※ 2023년 인쇄본 1월초 배부

【서식1】

(앞쪽)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세 대 수	세대	건물 동수	개동				
	사업승인일 (허가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준공일)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또는 입주자등 동의일)	년	월	일	연락처			

신청내용

(단위: 원, 부가세포함)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기간	
	총 사업비	자체부담금	지원신청금 (보조금)	착수에정일	완료예정일
	(VAT포함)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월 일	월 일
합 계	원	원	원		

「울산광역시 복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 지원 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또는 입주자등 동의)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 동의서(2/3동의) 【서식2】 2. 사업계획서 【서식3】 3.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에 대한 사업자(업체) 견적서(*2개 업체 이상), 내역서 등 4. 사업계획에 따른 현장 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사진대장 【서식4】 , 도면 등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5】 6. 공동주택 지원 신청 협약서 【서식6】 7.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7】 8. 공동주택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 【서식8】
------	---

(뒷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유의사항

[공통사항]

1.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공사)을 수행하여야 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실시는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후에 진행해야 하며, 사전에 집행한 사업(공사)에 대하여 추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은 임의로 증액(위원회 의결 필요)할 수 없으며, 「복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2항 및 "<별표>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총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둘 중 적은 금액)
4. 이에, 입찰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 기 결정 통지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보조금(선급금) 교부시 감액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사업(공사) 완료(준공) 후 정산시 감액된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0조제2항), 다음 연도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취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6. 사업의 취소(또는 축소)로 인하여 반납된 보조금은 차순위 공동주택에 우선지원 할 수 있습니다.
7.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가급적 상반기이내 사업완료가 가능해야 합니다.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한함)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기부를 강요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당해 사업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행위신고)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허가(신고수리)를 득하여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업추진 시에 자체부담금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추진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그 조정은 아래 구분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을 주기로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
 - 수시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 주기를 넘어 장기간 검토·조정된 바 없는 경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조정

【서식3】

사업계획서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사업(공사) 개요			
사업(공사)명			
목적(필요성)	○		
내용 및 규모	○ ※ 사업내용, 규모 등 기술합니다.		
사업비 개요			
총사업비	총사업비	자체부담금	지원보조금
	원	원	원
사업추진방법 (자금조달계획)	○ ※ 자체부담금에 대한 조달계획을 기술합니다.		
기타사항	○		

<참고> 1. 2개 이상 사업을 동시에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위 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는 사업성격에 적합하게 임의 조정 가능합니다.

【서식4】

현장사진대장

사 진 구 분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사업계획시[]	사업완료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시[]	(해당란에 √표)
단 지 현 황	단 지 명			
	주 소			
추진 사업 명				
현장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1. 2개 이상 사업을 동시에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위 사업별로 현장사진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지원신청서류 중 **현장사진대장**은 방문우편 접수와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youna0115@korea.kr)**로도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사진구분은 '사업계획시' , '사업완료시'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시' 를 구분하여 √표 합니다.

【서식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사업자

단 지 명	대표자 (회장)	사업자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기관·단체명	보조사업명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정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1. 당해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동안 구청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 지원 내역을 기재합니다.
2. 보조금 지원 내역 확인은 건축주택과(☎241-8027)로 연락바랍니다.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단지명

대표(회장)

(서명)

[서식6]

공동주택 지원 신청 협약서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기구) 또는 입주자 대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 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 사업추진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협약 합니다.

제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_____ 년 월 일
또는 (관리사무소장): _____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_____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공동주택 지원 사업추진 유의사항

공통사항

1.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공사)을 수행하여야 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실시는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후에 진행해야 하며, 사전에 집행한 사업(공사)에 대하여 추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은 임의로 증액(위원회 의결 필요)할 수 없으며,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2항 및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총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둘 중 적은 금액)
4. 이에, 입찰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 기 결정 통지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보조금(선급금) 교부시 감액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사업 완료 후 정산시 감액된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0조제2항), 다음 연도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취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6. 사업의 취소(또는 축소)로 인하여 반납된 보조금은 차순위 공동주택에 우선지원 할 수 있습니다.
7.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가급적 상반기내 사업완료가 가능해야 합니다. (공용 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한함)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기부를 강요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당해 사업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행위신고)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허가(신고수리)를 득하여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업추진 시에 자체부담금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추진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그 조정은 아래 구분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규칙 제7조제2항)
 - 정기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을 주기로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
 - 수시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 주기를 넘어 장기간 검토·조정된 바 없는 경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조정

【서식7】

공동주택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제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단지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지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서식8】

공동주택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

공동주택 단지현황

단 지 명			
세 대 수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기재합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	세대	전용면적, 세대수는 건축 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수	세대	
	합계	세대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또는 입주자등 현황

연번	직책	성명	동/호수	연락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 복구청에 신고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및 정원을 기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되지 아니한 경우 : 자치회 또는 금회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입주민 대표 및 대표와 함께 업무를 추진 하는 입주민 명단을 기재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자치기구) 정원				명	

관리주체 현황

관리회사명	본사 주소	관리소장명	연락처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만 기재합니다.

【서식9】

(앞쪽)

공동주택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신청 내용

(단위: 원, 부가세포함)

사업명	총사업비 ¹ (A+B)	자체부담금 (A)	지원보조금 ² (B=①+②)	선급금 ³ ①	예정잔액 ②	사업기간	
						착수에정일	완료예정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합 계	원	원	원	원	원		

「울산광역시 복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선급금)**을 신청하오니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고한 입찰공고문 사본 - 그 외 공동주택단지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입찰공고문을 입주자들에게 공고했음을 증명하는 사진 및 입찰공고문 사본 2. 낙찰자 선정결과 공고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한 낙찰자 선정결과 공고문 사본 - 그 외 공동주택단지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낙찰자 선정 결과를 입주자들에게 공고했음을 증명하는 사진 및 낙찰자 선정 결과 공고문 사본 3. 입찰참가 및 낙찰 현황 【서식10】 4. 사업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5. 계약금액에 따른 내역서(제경비 계산서) 사본 6. 보조금(지원금) 입금을 위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예금주인 통장 사본 - 그 외의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자(입주민 대표)가 예금주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7.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부담 전용 통장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예금주인 통장 사본 - 그 외의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자(입주민 대표)가 예금주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7. 사업(공사) 계약자 쌍방 간의 착수계 【서식11】
작성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 사업비 : 입찰 등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상 공사계약금을 사업별로 기재합니다. 당초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상의 총 사업비보다 줄어든 수 있습니다. 2. 지원보조금 : 공사계약금을 총 사업비로 하여, (뒷면)의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에 따라 지원보조금을 재산정합니다.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지원 결정금액”과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이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B=①+②)”으로 기재합니다. 3. 선 급 금 : 지원보조금의 7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뒷쪽)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조례 제4조 및 별표)

구 분	세 대 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지원상한액
공용시설 유지보수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천원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천원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천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천원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천원

■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

1. 임의 공동주택에서 아래 사항을 가정

세대수	당해 연도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기 지원 받은 보조금								
		2018년	2019년	2020년						
300세대	※○○시설 공사 사업이 아래와 같이 진행됐을 경우	1,500만원	1,000만원	-						
	1) 당초 공동주택지원신청 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총사업비</td> <td>자체부담금</td> <td>보조금 지원신청금</td> </tr> <tr> <td>2,000만원</td> <td>1,0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able>	총사업비	자체부담금	보조금 지원신청금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총사업비	자체부담금	보조금 지원신청금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 구청에서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 990만원		1,500만원							
3) 입찰을 통해 체결한 총 공사계약금 : 1,400만원		500만원								
		(?)								

2. 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금**을 총 사업비로 하여서도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금액을 아래 예시와 같이 재산정합니다.

1) 공사계약금에 대해 “보조금 지급비율”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 70%이하
-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공사계약금) × 보조금 지급비율
= 총 사업비(공사계약금) × 보조금 지급비율 = 1,400만원 × 70%이하 = 980만원

2) 공사계약금에 대해 “지원 상한액”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5년간(2019년 ~ 2023년) 지원가능한 보조금 지원상한액 : 4,000만원
- 보조금 지원상한액 - 기(2019년~2023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
= 4,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3) 1)과 2) 비교하여, 공사계약금에 대한 위 두 가지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한 지원가능 금액 산정

- 별표 상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과 “지원 상한액” 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 (※적은 금액)
⇒ 980만원 < 1,00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980만원

4)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과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지원금 교부신청서] 상 지원보조금”으로 기재

-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VS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990만원 > 98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 980만원 (※적은 금액)

5)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이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보다 클 경우의 차액은 사전에 선금금 교부 신청시 차감하여 지급되거나 추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990만원 - 980만원 = 10만원 (※차감 또는 반납)

【서식10】

입찰 및 낙찰 현황

단 지 명		사 업 명	
입찰 명		입찰공고자	

입찰 현황 (1차 입찰)

입찰현황	입찰공고일		현장설명회일	입찰개찰일	입찰방법 (일반/제한/지명)	낙찰방법 (최저낙찰제/적격심사제)
입찰참가 현황	연번	사업자(업체)명		입찰가액 (원, 부가세 포함)	낙찰업체 (낙찰업체에 ○표)	유찰사유
				원		(유찰시 유찰사유 기재를 기재합니다.)
				원		
				원		
				원		
			원			
낙찰현황 (유찰시 기재안함)	낙찰자 공고일		낙찰 업체명	낙찰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업체 연락처

재입찰 현황 (2차 입찰)

입찰현황	입찰공고일		현장설명회일	입찰개찰일	입찰방법 (일반/제한/지명)	낙찰방법 (최저낙찰제/적격심사제)
입찰참가 현황	연번	사업자(업체)명		입찰가액 (원, 부가세 포함)	낙찰업체 (낙찰업체에 ○표)	유찰사유
				원		(유찰시 유찰사유 기재를 기재합니다.)
				원		
				원		
				원		
			원			
낙찰현황 (유찰시 기재안함)	낙찰자 공고일		낙찰 업체명	낙찰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업체 연락처

수의계약현황

수의계약 현황	연번	사업자(업체)명		견적가액 (원, 부가세 포함)	계약업체 (계약업체에 ○표)	비고
				원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 니다.)
				원		
				원		
				원		
			원			
계약자 현황	계약자 공고일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업체 연락처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찰 현황(1차 입찰) ⇨ 재입찰 현황(2차 입찰) ⇨ 수의계약현황을 실시한 순서에 따라 작성
- 그 외 공동주택 : 입찰을 실시한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작성.
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현황만 작성.

【서식11】

착 수 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착 수 사업 내용

사업명 (공사명)			
계약금액	원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자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일정	계약일자	착수일자	준공예정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상기 사업을 착수하였으므로 이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12】

(앞쪽)

공동주택 지원금(준공금) 교부 신청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신청내용

(단위: 원, 부가세포함)

사업명	총사업비 ¹ (A+B)	자체부담금 (A)	지원보조금 ² (B=①+②)	기 교부액 ³ ①	준공금 ②	사업기간	
						착수일자	완료일자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합 계	원	원	원	원	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준공금)을 신청하오니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①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서식14】 - 실적보고서: 모든 항목 작성 / 정산서: 기 집행된 보조금(선급금)·자부담금에 대한 사항만 작성 / 별도로 이메일 송부: youna0115@korea.kr <사업(공사) 완료(준공) 증빙자료> ② 준공을 검수확인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의록(의무대상) 또는 입주자등(%) 동의서 【서식13】 ③ 사업완료 현장사진대장 【서식4】 - 제출과 별도로 이메일 송부 : youna0115@korea.kr ④ 사업자(업체)가 제출한 사업(공사) 완료계(준공계) 사본 ⑤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입주자등에게 공지한 공지문 사본 ⑥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 정산결과를 공지한 공지문 사본 ⑦ 상기 공지문을 증명하는 사진 <사업(공사)비 지출 관련 증빙자료> ※ 아래 자료는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된 보조금(선급금)·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향후 잔여 공사대금 지급 후,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대금 지급을 위한 내부결재서류로 지출승인서·지출품의서·지출결의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개별 단지에서 사용하는 내부결재 양식을 사용하고, 자체서식 없을 시 【서식15】 , 【서식16】 을 사용 ⑨ 대금 송금 시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입금) 확인증 ⑩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⑪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 전체 ; 원본대조필 날인) ⑫ 자부담 전용통장 사본(통장 첫 페이지 및 지출부분 페이지 ; 원본대조필 날인)
작성방법	1. 총 사업비 : 입찰 등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상 공사계약금 을 사업별로 기재합니다. 당초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상의 총 사업비보다 줄어든 수 있습니다. 2. 지원보조금 : 공사계약금을 총 사업비로 하여, (뒷면)의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에 따라 지원보조금을 재산정합니다.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지원 결정금액”과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이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B=①+②)”으로 기재합니다. 3. 기 교부액 : 당초 “공동주택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에 따라 기 교부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뒷쪽)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조례 제4조 및 별표)

구 분	세 대 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지원상한액
공용시설 유지보수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천원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천원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천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천원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천원

■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

1. 임의 공동주택에서 아래 사항을 가정

세대수	당해 연도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기 지원 받은 보조금								
		2016년	2017년	2018년						
300세대	※○○시설 공사 사업이 아래와 같이 진행됐을 경우	2016년	1,500만원	'17년~' 21년 보조금누계 : 3,000만원						
	1) 당초 공동주택지원신청 시	2017년	1,000만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총사업비</td> <td>자체부담금</td> <td>보조금 지원신청금</td> </tr> <tr> <td>2,000만원</td> <td>1,0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able>	총사업비	자체부담금		보조금 지원신청금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18년	-
	총사업비	자체부담금	보조금 지원신청금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 구청에서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 990만원	2019년	1,500만원							
3) 입찰을 통해 체결한 총 공사계약금 : 1,400만원	2020년	500만원								
	2021년	(?)								

2. 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금을 총 사업비로 하여서도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금액을 아래 예시와 같이 재산정합니다.

1) 공사계약금에 대해 “보조금 지급비율” 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 70%이하
-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공사계약금) × 보조금 지급비율
= 총 사업비(공사계약금) × 보조금 지급비율 = 1,400만원 × 70%이하 = 980만원

2) 공사계약금에 대해 “지원 상한액” 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5년간(2017년 ~ 2021년) 지원가능한 보조금 지원상한액 : 4,000만원
- 보조금 지원상한액 - 기(2017년~2021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
= 4,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3) 1)과 2) 비교하여, 공사계약금에 대한 위 두 가지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한 지원가능 금액 산정

- 별표 상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과 “지원 상한액” 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 (※적은 금액)
⇒ 980만원 < 1,00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980만원

4)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과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지원금 교부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으로 기재

-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VS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990만원 > 98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 980만원 (※적은 금액)

5)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이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보다 클 경우의 차액은 사전에 선금금 교부 신청시 차감하여 지급되거나 추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 990만원 - 980만원 = 10만원 (※차감 또는 반납)

【서식14】

2023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제출일 : 년 월 일

단 지 명 :

대표자(회장) : (인 또는 서명)

○ 실무책임자 :

○ 연 락 처 :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는 방문우편 접수와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youna0115@korea.kr)로도 송부하여야 합니다.

I . 실적보고서

I . 사업개요 및 추진성과

보조사업자					전년도 평가등급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보조금	원	집행 금액	원	집행률	%
	자부담	원		원		%
	총사업비	원		원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 추진방법	○ ○ ○					
추진계획 <실행계획서의 계획 기록>			추진결과 <실제 추진 결과 기록>			달성률
• • • •			• • • •			%
사업의 성과	매우적절	적절	보통	미흡	매우미흡	
달성된 성과의 질적 수준		○				
달성된 성과의 지속가능성		○				

○ 주요사진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진 첨부

별첨 사진대장 참조	
사진제목	사진제목
사진제목	사진제목
사진제목	사진제목

Ⅱ. 자체평가

구 분	내 용
잘 된 점	○
부진한 점	○
자체 발전방안 (향후 사업 추진 시)	○
개선 및 건의사항	○

II. 정산서

○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30,000,000	10,000,000	20,000,000	30,000,000	10,000,000	20,000,000	0	0	0	0

○ 보조금 집행현황(계획대비)

(단위 : 원)

비 목	당 초 계획액	집행내역				집행잔액	
		지출일자 (결의번호)	지출액	지급처 (지급방법)	집행내역	잔액	발생사유
계	10,000,000		9,210,000			0	미발생
보수공사	7,000,000	5. 25.	6,400,000	(주)○○건설 (계좌이체)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0	미발생
보수공사	3,000,000	6. 20.	2,810,000	(주)○○건설 (계좌이체)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0	미발생

○ 자부담 집행현황(계획대비)

(단위 : 원)

비 목	당 초 계획액 (A)	집행내역				집행잔액	
		지출일자 (결의번호)	지출액 (B)	지급처 (지급방법)	집행내역	잔액 (A-B)	발생사유
계	30,000,000		30,000,000			0	미발생
보수공사	10,000,000	5. 26.	10,000,000	(주)○○건설 (계좌이체)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0	미발생
보수공사	20,000,000	6. 20.	20,000,000	(주)○○건설 (계좌이체)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0	미발생

○ 사업변경 승인내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구 분	항목	승인일자 (문서번호)	변경금액	변경내용	비고
단체내부변경내역	해	당	없	음	
담당부서승인내역					

○ 사업비 정산 반납

(단위 : 원)

구 분	반납일자	반납액	미반납액	반납처	미반납사유	비고
보조금		해	당	없	음	
이 자						

【서식15】 지출 품의서

지 출 품 의 서

재원구분 : <input type="checkbox"/>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자부담			대표자 (전결)				결 재
사업비 총액 :							
보조금 금액 :							
자부담 금액 :							
지출 추정금액 금 원(금 원)							
단위사업명			사업기간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합계					부가세포함	
비고	내역서 첨부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 결재란 : 결재권자는 공동주택 형편대로 조정사용
- * 사업기간 : 해당 사업 준공기한 기재

【서식16】 지출 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대표자 (전결)				결 재
재원구분 : <input type="checkbox"/>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자부담					
사업비 총액 :					
보조금 금액 :					
자부담 금액 :					
지출금액 금 원(금 원)					
발의 및 원인행위일	(인)	지출항(비)목			
		단위사업			
지출부기재	(인)	비목			
내 역					
적요			금액		
자부담 : 계약금[] 중도금[] 준공금[] 보조금 : 선급금[] 준공금[]					
채 주 (업체)	주소:	지급방법			
	상호:				
	성명:				
비고					

-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지내 형편대로 조정사용
-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이 인출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 지출 발생 건수 별로 작성 : 자부담 - 계약금, 중도금, 준공금 등 / 보조금 - 선급금, 준공금

【서식17】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신청서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세 대 수	세대	건물 동수	개동
	사업승인일 (허가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준공일)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자)	연락처		

시설물 개요

시설구분	현황	시설구분	현황
가스시설	개소	맨홀정화조·하수도	개소
난방시설	개소	옥상 및 계단, 난간	개소
발전 및 변전시설	개소	우물 및 저수시설	개소
위험물 저장시설	개소	펌프실·전기실·기계실	개소
소방시설	개소	주차장	개소
연탄가스배출기 (세대 내부 제외)	개소	경로당·어린이놀이터	개소
석축·옹벽·담장	개소	기타()	개소

신청사유

○

※ 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신청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주택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신청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증빙자료
 - 자치기구 구성된 경우 : 자치기구 회의록 사본
 - 자치기구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안전관리) 동의서(2/3동의) 【서식2】
- 현장사진대장 【서식4】
- 공동주택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 【서식6】

【서식18】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신청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세 대 수	세대	건물 동수	개동
	사업승인일 (허가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준공일)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자)	연락처		

시설물 개요

시설구분	현황	시설구분	현황
단지내도로			
지하주차장 여부			

신청사유

○

※ 당 공동주택의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을 신청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주택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신청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류
- 자치기구 구성된 경우 : 자치기구 회의록 사본
- 자치기구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주택 입주민의 신청 동의서 (2/3동의)
2. 현장사진대장 【서식4】
3. 자치기구 및 입주자등 현황 【서식8】

세부추진계획(1) :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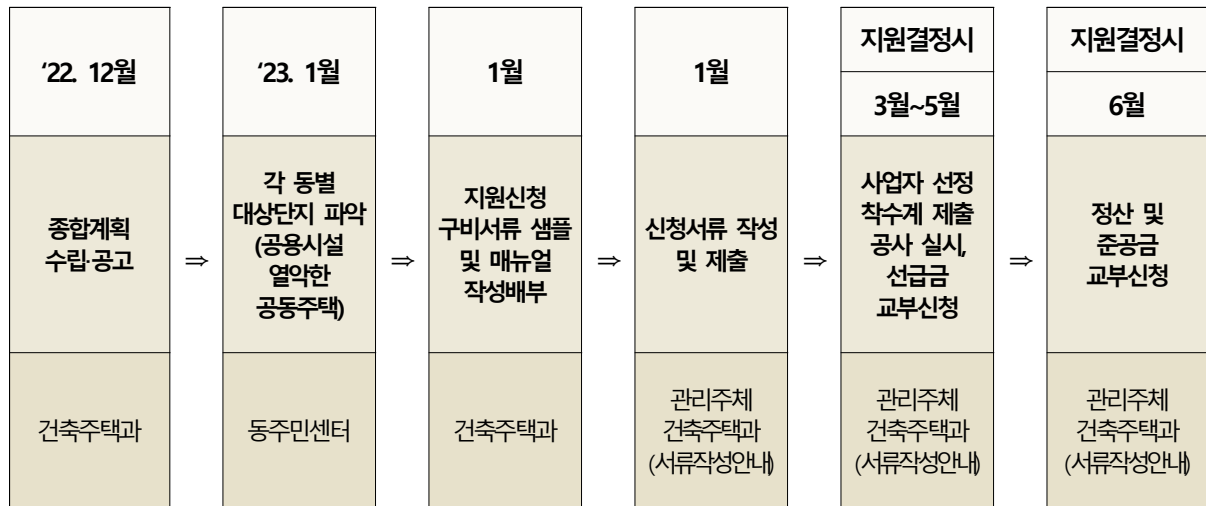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 복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조 제3조

-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¹⁾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015. 5. 18. 개정)

사업 추진 절차

● 행정서비스 TF팀 운영

- 구성 : 건축주택과 건축관리팀 2명
- 운영 : 대상단지 관리주체에게 지원사업 신청서류 구비방법에 관해 직접적인 안내 실시



• 대상단지

- 소규모 노후 단지 중 거주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원사업 신청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있는 단지
- ※ 소규모 노후 단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7년경과 공동주택

■ 사업추진 절차도



※ 정부 예산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착수계 제출 후 바로 보조금(선급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급금 금액은 지원결정 금액의 7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단지

● 공동주택현황

(2023. 1월 기준)

구분	관내 공동주택		사용검사 7년 경과 공동주택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19세대 이하	210	2,229	198	2,102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38	2,503	30	2,095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55	17,774	42	13,357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42	31,239	27	19,839
1,000세대 초과	13	17,108	9	12,425
합계	358	70,853	306	49,818

● 2023년 지원신청 가능단지

- 사용검사(준공)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2016. 1. 1.이전 준공)된 공동주택 306단지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단지)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금액	100	150	180	180	400	400	500	480	480	500	500	500	500	500	600	5,970
단지수	21	24	32	34	30	33	36	36	36	35	36	39	34	39	35	500

지원대상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등 다음 각 호의 사업 (조례 제4조의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확충사업 2. 단지 내 도로(인도 및 교통시설물 포함)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 보수 4.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 5. 수목의 전지 및 방제 6.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7. 단지 내 담장 및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8. 단지 내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10. 단지 내 벤치, 파고라,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집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등을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13.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의 설치 및 개선 14. 입주민 공용 복리·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및 개선 15.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16.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1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사업이 행위허가(신고) 대상 사업일 경우, 사전에 허가(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건축주택과 ☎ 241-80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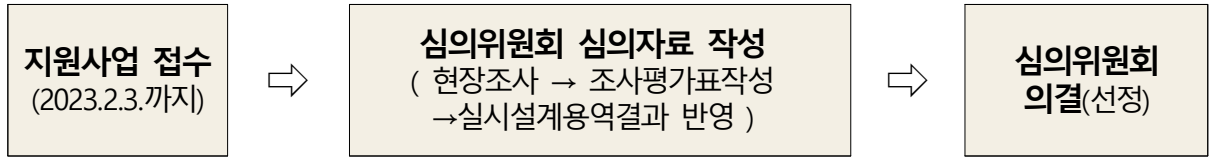
지원제외사업

● 다음 각 호의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단지(건축물 대장상 공동주택단지) 밖의 시설물에 대한 사업 2. 지원신청 이전에 시행한 사업 3. 각종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연관된 사항은 제외) 사업 4. 지원사업시행 공고일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업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행위신고)를 요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허가(신고수리)를 득하지 아니한 사업 6.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사업 7. 과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공동주택이 신청하는 사업

■ 지원대상단지 선정

● 선정절차



●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료를 토대로 종합 심의의결하여 선정

●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절차

- 1) 접수된 지원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 확인을 위한 공동주택별 현장조사 실시
- 2) 공동주택별 지원신청서·건축물대장 등 각종 관련 자료를 통하여 『조사평가표』 작성
- 3) 접수된 지원사업에 대한 구청의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 구청 실시설계용역 : 지원사업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과다예산지출을 방지하고자 실시

■ 조사평가표 평가항목

● 공통평가항목

최근 5년간 지원 실적 비율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적은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준공 후 경과 연수	준공 후 경과 연수가 긴, 노후한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자체부담금 비율	총 사업비 중 자체부담 비용이 클수록 배점이 높음
신청주택 세대수	세대수가 많은 대규모 공동주택 일수록 장기수선충당금 등 자체 재원 확보가 용이함.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세대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 가점(+)**부여 항목**

• 지원 신청한 사업이 아래 사업일 경우

- 노후 경로당 개보수 사업
 -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노인장애인과 241-7664)
-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옹벽, 담장 등 구조물 보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용역 결과 등 **입주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
- 태양광 및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사업 등 **에너지절감 실천사업**
 - 타 부서기관의 관련사업 국시비 지원대상단지는 중복지원 불가
- 1996. 6. 8.이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받은 2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충 사업**
 - 교통행정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교통행정과 241-7982)
- **근로자 환경 개선 사업**
 -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 경비원 청소원 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이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의무적 시행 사업

• 각종 시책 참여 단지일 경우

- 『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제』 참여 단지 (시 환경생태과 229-3133, ☎ 환경위생과 241-7766)
 - ☞ 범위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범 사업 참여 단지 (☎ 환경미화과 241-7813)
 - ☞ 범위 : 7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전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이 있는 단지 (☎ 환경미화과 241-7813)
- 전년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참석 단지 (☎ 건축주택과 241-8027)
 - ☞ 범위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된 공동주택
- 공동주택 발코니 및 담장에 초화류를 조성한 단지 (☎ 건축주택과 241-802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추가설치 단지 가점부여 (☎ 건축주택과 241-8027)
-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공모 신청 및 우수 선정 단지 가점부여 (☎ 건축주택과 241-8027)

※ "각종 시책 참여" 가점에 대하여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 항목별 해당 범위에 속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적으로 가점이 부여되며 신청 단지가 위 가산점 부여 대상 단지인지와 각 시책사업 관련 담당과별로 확인바랍니다.

● 감점(-)**부여 항목**

• 지원 신청한 공동주택단지가 아래의 단지일 경우

- 당해 연도 포함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및 분쟁 등으로 행정조치(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고발)를 받은 사례가 있는 단지 (☎ 건축주택과 241-8027)

● 상세배점기준 : 【별표1】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사평가표 배점기준" 참조

■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 1)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서식1】
- 2) 공동주택 지원 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또는 입주자등 동의) 증빙자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 동의서(2/3동의)【서식2】
- 3) 사업계획서【서식3】
- 4)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 사업비에 대한 사업자(업체) 견적서(*2개 업체 이상), 내역서 등
- 5) 사업계획에 따른 현장 관련자료
 - 현장사진대장【서식4】, 도면 등
-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5】
- 7) 공동주택 지원 신청 요약서【서식6】
- 8) 청렴 이행서약서【서식7】
- 9) 공동주택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서식8】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
- 현장사진대장【서식4】은 담당자☎241-8027) 이메일(youna0115@korea.kr)로 별도송부 바람

■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지원금 교부 신청시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 1) 공동주택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서【서식9】
- 2) 사업자(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증빙자료
 -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www.k-apt.go.kr)”에 공고한 입찰공고문 사본
 - 그 외 공동주택단지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입찰공고문을 입주자등에게 공고했음을 증명하는 사진 및 입찰공고문 사본
- 3) 낙찰자 선정결과 공고 증빙자료
 -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한 낙찰자 선정결과 공고문 사본
 - 그 외 공동주택단지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낙찰자 선정 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공고했음을 증명하는 사진 및 낙찰자 선정 결과 공고문 사본
- 4) 입찰 및 낙찰 현황【서식10】
- 5) 사업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 6) 계약금액에 따른 내역서(제경비 계산서) 사본
- 7) 보조금(지원금) 입금을 위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기구)가 예금주인 통장 사본
 - 그 외의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자가 예금주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8)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부담 전용** 통장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기구)가 예금주인 통장 사본
 - 그 외의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자가 예금주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9) 착수계【서식11】

■ 지원금(준공금) 신청 구비서류

-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준공금 신청시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 1) 공동주택 지원금(준공금) 교부 신청서【서식12】
- 2)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서식14】
 - 실적보고서 : 모든 항목 작성
 - 정산서 : 기 집행된 보조금(선급금)·자부담금에 대한 사항만 작성
 - 제출과 별도로 이메일 송부 : youna0115@korea.kr

<사업(공사) 완료(준공) 증빙자료>

- 3) 준공을 검수확인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의록(의무대상) 또는 입주자등(2/3) 동의서【서식13】
- 4) 사업완료 현장사진대장【서식4】
 - 제출과 별도로 이메일 송부 : youna0115@korea.kr
- 5) 사업자(업체)가 제출한 사업(공사) 완료계(준공계) 사본
- 6)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입주자등에게 공지한 공지문 사본
- 7)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 정산결과를 공지한 공지문 사본
- 8) 상기 공지문을 증명하는 사진

<사업(공사)비 지출 관련 증빙자료>

※ 아래 자료는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된 보조금(선급금)·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향후 잔여 공사대금 지급 후,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대금 지급을 위한 내부결재서류로 지출승인서·지출품의서·지출결의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개별 단지에서 사용하는 내부결재 양식을 사용. 자체양식 없을 시 【서식15】, 【서식16】을 사용
- 10) 대금 송금 시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입금) 확인증
- 11)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 12)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 전체 ; 원본대조필 날인)
- 13) 자부담 전용통장 사본(통장 첫 페이지 및 지출부분 페이지 ; 원본대조필 날인)

■ 지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공사대금 잔금(준공금)을 지급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

<사업(공사)비 지출 관련 증빙자료>

- 1) 대금 지급을 위한 내부결재서류로 지출승인서·지출품의서·지출결의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개개별 단지에서 사용하는 내부결재 양식을 사용. 자체양식 없을 시 【서식15】, 【서식16】을 사용
- 2) 대금 송금 시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입금) 확인증
- 3)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 4)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 전체 ; 원본대조필 날인)
- 5) 자부담 전용통장 사본(통장 첫 페이지 및 지출부분 페이지 ; 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추진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공사)을 수행하여야 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공사 실시는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후에 진행해야 하며, 사전에 집행한 사업(공사)에 대하여 추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은 임의로 증액(위원회 의결 필요)할 수 없으며, 「복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2항 및 「<별표>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총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둘 중 적은 금액)
- 이에, 입찰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 기 결정 통지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감액 될 수 있으며, 보조금(선급금) 교부시 감액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사업(공사) 완료(준공) 후 정산시 감액된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0조제2항), 다음 연도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취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사업의 취소(또는 축소)로 인하여 반납된 보조금은 차순위 공동주택에 우선지원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가급적 상반기내 사업완료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한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기부를 강요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행위신고)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허가(신고수리)를 득하여야 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의사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업추진 시에 자체부담금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추진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그 조정은 아래 구분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할 날부터 3년을 주기로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
 - **수시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할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 주기를 넘어 장기간 검토·조정된 바 없는 경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조정

최대 지원가능금액 산정 예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조례 제4조 및 별표)

구 분	세 대 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지원상한액 (5년간 보조금 누계 부가세 포함)
공용시설 유지보수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천원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천원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천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천원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천원

최대 지원가능금액 산정

• ○○공동주택에서 아래와 같은 현황 있을 시 최대 지원가능금액 산정 예시임

세대수	당해 연도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기 지원 받은 보조금		
		2018년	2019년	2020년
300세대	-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사업 - 총사업비 : 2,000만원 ※ 총사업비는 관련 사업자(업체) 2개 이상의 견적서 금액 중 최저 금액	2018년	1,500만원	'19년~'23년 보조금누계 : 3,000만원
		2019년	1,000만원	
		2020년	-	
		2021년	1,500만원	
		2022년	500만원	
	2023년	(?)		

※ 기(2019년 ~ 2023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 문의 : 건축주택과 ☎ 241-8027

1) 총사업비에 대해 "보조금 지급비율"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 **70%이하**
- 당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 보조금 지급비율
= 2,000만원 × 70%이하 = 1,400만원

2) 총사업비에 대해 "지원 상한액"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5년간(2019년 ~ 2023년) 지원 가능한 보조금 지원 상한액 : **4,000만원**
- 당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 기(2019년~2023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
= 4,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3) 위 1)과 2) 비교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두 가지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한 지원가능 금액

-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 (※적은 금액)
⇒ 1,000만원 < 1,40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총공사비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1,000만원(최대 지원가능금액)**

세부추진계획(2)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배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확보

-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 소규모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함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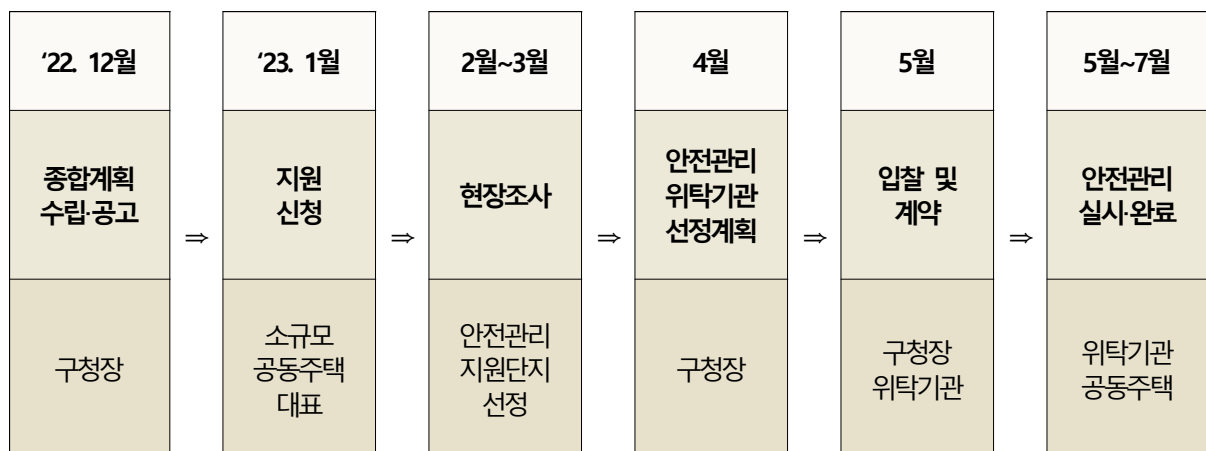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함

「울산광역시 복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조, 제4조의3

-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함.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함

사업추진 절차도



- 안전관리 위탁기관은 별도 계획 수립하여 선정(입찰 및 계약) 예정

안전관리 지원대상

공동주택현황

(2023. 1월 기준)

관내 공동주택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사용검사 15년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수	동수	세대수	단지수	동수	세대수	단지수	동수	세대수
358	1,093	70,152	248	294	4,732	178	214	3,343

2023년 지원신청 가능단지

- 사용검사(준공)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2008. 1. 1.이전 준공)된 소규모 공동주택 214개 동 중 기 시행한 대상 84개 동을 제외한 130개 동
- 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준공일자에 관계없이 지원신청 가능(조례 제4조의3제3항)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업무

지원대상단지 선정

- 신청단지 중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서로 순위표 작성하되, 현장조사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우선순위로 함

안전관리 지원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을 신청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 1)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신청서【서식17】
- 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신청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증빙자료
 - 자치기구 구성된 경우 : 자치기구 회의록 사본
 - 자치기구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안전관리) 동의서(2/3동의)【서식2】
- 3) 현장사진대장【서식4】
- 4) 자치기구 및 입주자등 현황【서식8】

사업추진 안내사항

- 안전관리 업무 수행 결과, 공동주택 보수공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수공사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하므로, 향후 자체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하여 입주민간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연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구청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문의사항은 울산북구청 건축주택과(☎241-8027)로 문의

세부추진계획(3) :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추진배경

● 공동주택의 단지내도로에 대한 안전 확보

-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인 단지내도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님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바, 공동주택의 교통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근거법령

●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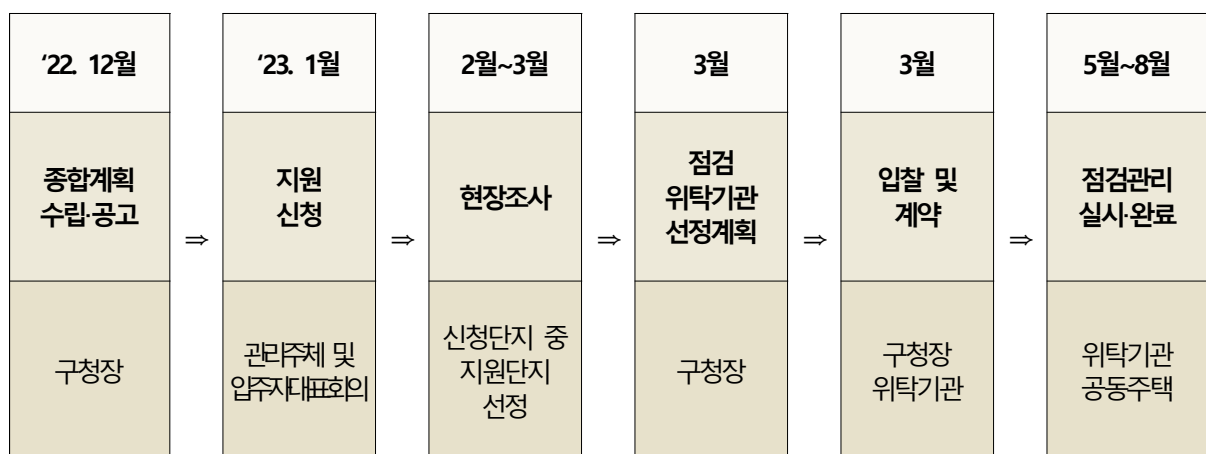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업무의 위탁)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6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 교통안전 실태점검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로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계획을 단지내도로를 설치·관리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사업추진 절차도



■ 실태점검 지원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97개 단지
- 단지내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지원대상단지 선정

- 신청단지 중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우선 선정하며, 신청에 따라 실태점검 실시

■ 실태점검 지원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 1)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신청서【서식18】
- 2)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확인 서류
 - 자치기구 구성된 경우 : 자치기구 회의록 사본
 - 자치기구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주택 입주민의 신청 동의서(2/3동의)【서식2】
- 3) 현장사진대장【서식4】
- 4) 자치기구 및 입주자등 현황【서식8】

■ 사업추진 안내사항

- 실태점검 업무 수행 결과, 단지내 교통시설에 대하여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통보함에 따라, 개선 공사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향후 자체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하여는 입주민간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실태점검 결과 개선공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연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구청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문의사항은 울산북구청 건축주택과(☎241-8027)로 문의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1820호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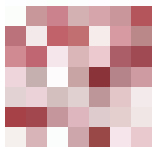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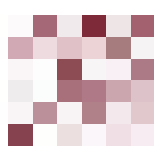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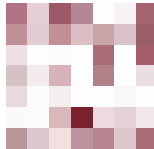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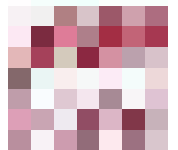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복구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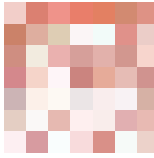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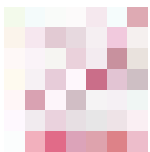



1. 등록 공인 내역

연번	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사용개시일)	인영	비고
1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인	민원사무 처리 인증기 구입	2022. 12. 29.		민원 사무 전용
2	울산광역시복구 기획예산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3	울산광역시복구 기획예산과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4	울산광역시복구 미디어정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5	울산광역시복구 미디어정보과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6	울산광역시복구 경제일자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7	울산광역시북구 경제일자리과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8	울산광역시북구 회계과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9	울산광역시북구 세무1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0	울산광역시북구 세무1과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1	울산광역시북구 세무2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2	울산광역시북구 세무2과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3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자치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4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자치과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5	울산광역시북구 복지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6	울산광역시북구 복지정책과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7	울산광역시북구 자원순환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8	울산광역시북구 자원순환과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2. 폐기 공인 내역

연번	공인명	등록사유	폐기일자	인영	비고
1	울산광역시북구 기획예산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2	울산광역시북구 기획예산담당관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3	울산광역시북구 미디어정보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4	울산광역시북구 미디어정보담당관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5	울산광역시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6	울산광역시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7	울산광역시북구 회계담당관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8	울산광역시북구 회계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9	울산광역시북구 징수담당관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0	울산광역시북구 징수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1	울산광역시북구 부과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2	울산광역시북구 부과담당관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3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소통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4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소통과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5	울산광역시북구 복지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6	울산광역시북구 복지지원과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7	울산광역시북구 환경미화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18	울산광역시북구 환경미화과 분임재무관인	'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2023. 1. 1.	